

우리생활  
길라잡이

우리생활  
길라잡이

**발행일** 2017년 4월

**발행처**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전화 031-670-9327 팩스 031-672-9591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비매품**

**유의사항**

이 책의 내용은 2017년 4월 현재 관련 법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책자 발간 이후 정착금 등 지급 기준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생활 기초가장비



## 제1장 사회생활 안내

1. 대중교통수단 이용	8
2. 각종 통신 이용	25
3. 은행 이용	32
4. 주거 이용	40
5. 병원 이용	54
6. 시장과 가격	57
7. 머리 손질과 몸단장	67
8. 외국 출입	71
9. 법률 사항	75
10. 주요 공공기관 안내	79

## 제2장 정착지원제도

1. 하나원 교육	88
2. 가족관계등록	90
3. 주거 지원	96
4. 정착금	106
5. 취업장려금	114
6. 교육지원금	118
7.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123
8. 거주지역에서의 보호제도	126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34
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 지원	142

## 제3장 직업과 교육

1. 직업의 의미 및 직장생활	148
2. 직업 관련 정보	156
3. 직업훈련과 취업	160
4. 한국의 교육제도	170
5. 진학 지원	174

## 부록

대한민국 국민 기본상식
정식 국명
위치와 면적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
인구
경제
행정구역
명절과 공휴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소속기관 명단
전국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및 연락처
취업보호담당관 현황
생활에 유용한 정부 포털 소개
주요 전화번호 안내
대한민국 전도
전국 지하철 노선도
찾아보기

# 제1장

## 사회생활 안내



1. 대중교통수단 이용
2. 각종 통신 이용
3. 은행 이용
4. 주거 이용
5. 병원 이용
6. 시장과 가격
7. 머리 손질과 몸단장
8. 외국 출입
9. 법률 사항
10. 주요 공공기관 안내

# 1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중교통수단이란,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이 있습니다.

## 1) 지하철

### 1 지하철이 무엇인가요? ①



지하철은 보통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흔히 전철이라고도 하며 지하철역 안에서는 보통 전동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혼잡한 도로 위를 다니는 승용차, 택시, 버스 등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시간을 예상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입니다.

#### ① 지하철 노선

지하철 노선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은 서울 1호선~9호선과 연결된 인천선, 분당선, 중앙선, 경춘선, 경의선 등을 포함합니다.

→ 전국 지하철 노선도는 뒤에 있는 부록 214쪽을 참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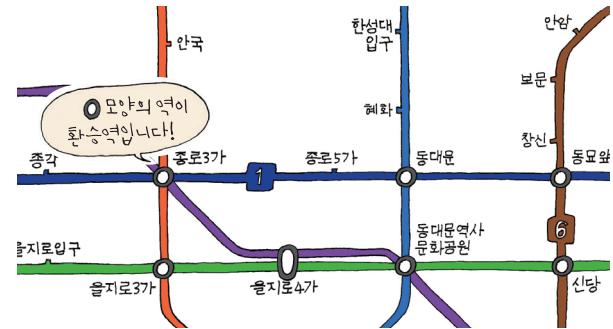
### ② 환승역이란?

다른 노선으로 바꾸어 탈 수 있도록 마련된 지하철역을 환승역이라고 합니다. 이 환승역은 서로 다른 노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전동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매우 많고 혼잡합니다.



#### 환승할 때 주의하세요!

환승역은 여러 개의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갈아탈 때마다 노선도를 잘 확인한 후 타야 합니다.



### 2 교통카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②

#### ① 회용 교통카드

회용이란 말은 한 번만 사용한다는 뜻으로,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해당 지하철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지하철은 현금 자체로는 이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서 지하철역의 단말기에 접촉을 해야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으며 버튼을 누르고 돈을 넣으면 1회용 승차권이 나옵니다.



어? 기본요금이 1,250원이라면서요?  
근데 돈을 더 내라는 건 뭐죠?

그건 보증금 500원을 포함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회용 카드를 구입할 때에는 기본요금 외에 500원의 돈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이 500원은 지하철 이용 후에 바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와 1회용 교통카드



여러 사람이 다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증금제도를 두는 거예요. 역에 마련되어 있는 이 '보증금 환급기'에 다 쓴 카드만 넣으면 500원이 나옵니다.

1회용 승차권의 기본요금은 1,250원(서울)이지만 가고자 하는 역이 기본거리를 벗어나 멀리 있는 경우에는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②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카드에 충전을 해서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충전된 액수가 없어 집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액수만큼 돈을 내고 다시 충전해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기계와 '티머니(T-money)'라고 적혀 있는 길거리 판매점, 그리고 역시 티머니 표시가 되어 있는 편의점이라 불리는 상점에서 판매합니다. 편의점은 하루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카드형과 휴대폰 고리방식의 티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종류의 충전식 교통카드

- 카드형



- 고리형





### 교통카드 충전이 뭐가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돈을 주고 원하는 액수만큼 채우는 것을 말해요. 1회 충전할 때 1,000원 이상이면 되고 몇 만 원도 충전이 가능해요.

그럼, 교통카드 충전은 어디에서 하나요?

- ① 지하철역에 설치된 기계
- ② '티머니(Tmoney)' 판매/충전 표시가 되어 있는 판매점
- ③ 티머니 표시가 있는 편의점



지하철역에 설치된 교통카드 판매 & 충전기

### ③ 후불제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난 뒤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돈을 내는 방식의 카드입니다. 이런 방식을 후불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처음 발급을 받을 때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면 됩니다. 돈을 나중에 내는 방식이라 1회용이나 충전용 카드에 비해 번거롭지 않고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드입니다.(관련 내용은 63쪽을 참고하세요)

➔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 보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 ③ 지하철 요금은 얼마인가요? ③

지하철 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와 충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가 다릅니다. 먼 거리일수록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 ① 1회용 카드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으로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할 때 성인과 청소년은 똑같이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이 추가된 1,350원이고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 ② 충전식 교통카드/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성인은 1,250원, 청소년은 720원, 어린이는 450원입니다.

#### ③ 교통카드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버스 등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바뀌탈 때 가격을 깎아주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요금이 추가되는 경우

거리에 따라 10~50km구간은 5km마다 100원씩, 50km이상 구간은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증가합니다.



어르신·장애인은 무요로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노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무임용 교통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세요. 장애인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대상자일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 등 발급 가능합니다.

#### 4 지하철 타는 방법을 알려 주시겠어요? ④

##### ① 지하철역 출입구

역이 있는 시내 거리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가 설치된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삽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교통카드와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중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고릅니다. 이때 기계의 화면을 잘 보고 원하는 것을 찾아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② 승차와 하차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 곳에 카드를 접촉합니다.



## 2) 버스

#### 5 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⑤

버스는 각 지역을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버스 요금은 지하철과 달리 현금으로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 운전기사의 옆에 돈을 낼 수 있는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돈을 넣으면 됩니다.

특히 교통카드(T-money)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내는 경우보다 기본요금을 100원 더 적게 냅니다.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시외버스, 마을버스, 번호가 다른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냅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6 버스의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⑥

우리나라의 버스는 종류도 많고 노선도 다양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맞는 버스를 선택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 ① **고속버스** :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빠르게 전국의 지역을 이동하는 버스로 각 지역마다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간을 주로 이동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먼 지역을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고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서울의 주요 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 명	위치	전화	예매 사이트	
서울 (강남)	경부, 영동선	3호선, 7호선, 9호선	1688-4700	www.kobus.co.kr
	호남선	고속터미널역	02-6282-0114	www.hticket.co.kr
동서울	2호선 강변역		1688-5977	www.ti21.co.kr
서울남부	3호선 남부터미널역		1688-0540	www.busterminal.or.kr

- ② **시외버스** : 시내에서 그 도시 바깥의 특정한 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각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 ③ **시내버스** : 도시 중심부를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로 가장 흔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버스입니다.
- ④ **마을버스** : 동네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이어주는 버스로 시내버스보다 짧은 구간을 운행하는 작은 규모의 버스입니다.



⑤ **공항버스**: 공항과 도시 중심부, 공항과 역 등을 왕복하는 버스입니다.

**7** 버스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⑦



버스 이용 요금은 버스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요금을 알아두어야 이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요금은 버스에 오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되고 버스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물어 보셔도 됩니다.

**간선버스** 주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빠르게 가는 게 목적입니다.

**지선버스** 여러 지점을 다니면서 간선버스나 지하철과 연결을 해줘요.

**광역버스** 서울 외곽지역과 서울 시내를 빠르게 연결해 줍니다.

**순환버스** 특정 지역을 오가며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 버스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요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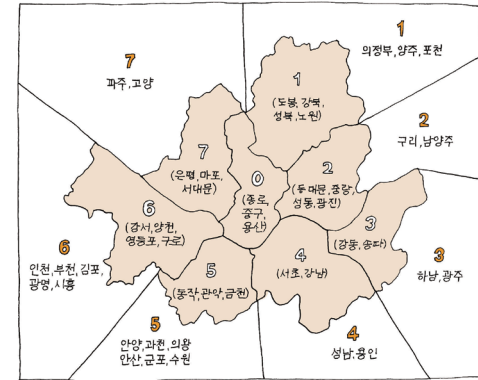
(2017년 현재/서울특별시 요금 기준/단위: 원)

구분	현금			교통 카드			조조할인(카드이용시)		
	일반	청소년	초등학생	일반	청소년	초등학생	일반	청소년	초등학생
간선버스(파랑색) 지선버스(초록색)	1,300	1,000	450	1,200	720	450	960	580	360
광역버스(빨간색)	2,400	1,800	1,200	2,300	1,360	1,200	1,840	1,090	960
순환버스(노란색)	1,200	800	350	1,100	560	350	880	450	280
마을버스	1,000	550	300	900	480	300	720	380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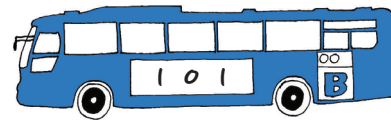


버스 번호에 관한 비밀을 아시나요?

서울시는 각 지역을 0에서 7까지 나누어 고유의 숫자를 버스 번호에 표기하고 있어요. 번호를 보면 어느 지역을 출발해서 어느 지역에 도착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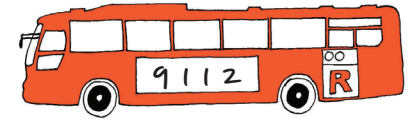


파랑(간선)버스 노선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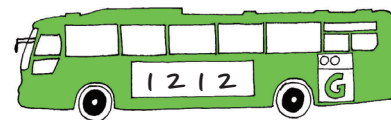
1 0 1 (세자리)  
 노선번호: 1  
 도착지역번호: 종로권 0  
 출발지역번호: 의정부권 1

빨강(광역)버스 노선번호(도착은 도시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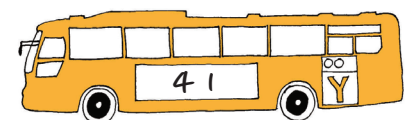
9 1 1 2 (네자리)  
 노선번호: 12  
 출발지역번호: 의정부권 1  
 광역버스번호: 9

초록(지선)버스 노선번호



1 2 1 2 (네자리)  
 노선번호: 12  
 도착지역번호: 동대문권 2  
 출발지역번호: 도봉권 1

노랑(순환)버스 노선번호



4 1 (두자리)  
 노선번호: 1  
 지역구분번호: 강남권순환 4

## 8 버스 요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⑧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깎아 주기도 하고 기본 거리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갈아탈 때에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는 버스나 지하철 등을 갈아탄 총 거리가 10km 이내일 때에는 기본요금만 내며 그 구간 안에서의 환승은 무료입니다. 갈아타는 것을 환승이라고 하며 갈아탄 총 거리가 10km를 넘으면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가 됩니다.



환승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출입구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반드시 카드를 접촉해야만 합니다. 요금은 카드를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에 맞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이 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승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제한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갈아탈 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경우에만 환승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 단,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내고 탈 때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뇨! 현금은 버스에 탈 때마다 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3) 택시

### 9 택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⑨

택시는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영업용 승용차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리 전화로 예약하여 택시를 불러서 탈 수도 있습니다.

### 10 택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⑩

- ① **일반택시** : 시민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일반적인 택시입니다.
- ② **콜택시(call taxi)** :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서 원하는 장소로 불러서 타는 택시입니다. 1,000원의 콜 요금을 내야 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콜요금으로 1,000원이 더 할증됩니다.



일반택시

- ③ **모범택시** : 보통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로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기본 요금도 일반택시에 비해 훨씬 더 비쌉니다.



모범택시

**11 택시 요금은 얼마나 비싼가요?** ⑪

택시는 일단 조금만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돈인 '기본요금'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 일반(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3,000원이고, 이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2km 정도입니다. 이후부터 100원씩 증가 합니다. 또한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이고 약 3km 정도 갈 수 있으며 200원씩 증가합니다. 택시 요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보통 현금으로 내지만 최근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택시가 많아져서 카드로 요금을 지불해도 됩니다. 카드는 앞서 말한 충전용 교통카드(티머니),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12 택시 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⑫

택시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택시에는 '미터기'라고 불리는 기계가 있어 거리와 시간을 요금으로 계산해 가격을 표시해 줍니다.

서울 일반(중형)택시의 경우 142m(거리요금)마다 100원씩 올라가지만, 시내 주행의 경우 차가 막혀서 35초(시간요금) 동안 142m를 가지 못할 경우에는 35초가 넘을 때 마다 100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거리요금은 164m를 넘을 때 마다, 시간요금은 39초를 넘을 때 마다 200원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외지역으로 이동하거나(시계 외 할증)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를 타는 경우(심야 할증)에는 할증된 요금으로 계

산이 됩니다. 할증요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에 추가로 값이 더 붙는 요금을 말하는데, 서울의 경우 시계 외 할증과 심야 할증의 경우 각각 20% 이상의 요금이 더 붙습니다.

**4) 기차****13 기차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⑬

기차 노선은 경부선(서울~부산), 호남선(용산~목포) 등 전국에 연결된 철도를 통해 전국 각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역이나 인터넷 등에서 승차권을 구입 후 지정된 좌석 혹은 입석·자유석(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을 이용합니다. 운임은 열차 종류, 이용 구간, 승객 유형(일반, 어린이, 경로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승차권 구입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기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⑭

여객 기차는 등급에 따라 고속열차(KTX, KTX-산천, SRT), 일반 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와 ITX-새마을, 경춘선을 운행하는 ITX-청춘이 있습니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 종별에 따라 가격도 각각 다른데, 가장 빠른 고속열차가 가장 비싸고 그 중간이 새마을호이며 무궁화호(누리로), 통근열차 순으로 저렴합니다.

- KTX : 2004년부터 운행 중이며 영업 최고 속도는 300km/h(직선구간에서는 속도가 더 빠름). 서울과 부산을 3시간 만에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기차임.
- KTX-산천 : 한국이 세계 네 번째로 개발한 고속열차로 10량 임(\* KTX는 20량)
- SRT : 2016.12월부터 운행 중이며, 수서역에서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 새마을호 : 1969년 2월부터 운행 중이며 무궁화호보다 정차역 수가 적어 속도(도착시간)가 더 빠름
- 무궁화호 : 대표적인 일반열차로 운행횟수가 가장 많음
- 누리로 : 전기 동차 열차로 무궁화호와 동급. 현재 '서울-신창' 간을 운행 중임.
- 통근열차 : 경의선, 경원선에 운행하는 중단거리 통근형 열차

## 15 기차 승차권 구입하는 방법은요? 15

가까운 기차역이나 여행사 등에 찾아가서 직접 승차권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에 미리 전화를 해서 출발하기 며칠 전에 미리 예약하여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여 구입하는 것을 예매라고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ail.com / www.letskorail.com / www.srail.co.kr)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매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코레일톡, SRT 모바일앱)을 통하여 예매를 많이 합니다.

➔ 철도고객센터

코레일(지역번호 없이 ☎ 1544-7788, 1588-7788), 에스알(지역번호 없이 ☎ 1800-147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예약을 위해서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 5) 항공

우리나라에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에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 16 항공권은 미리 예매해야 하나요? 16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사나 여행사 등을 통해 미리 예약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의 표가 미리 다 팔리고 없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매를 하면 본인이 출발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는 항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에 부득이하게 표를 사야 한다면, 신분증을 갖고 공항에 가야 합니다. 국내선은 최소한 출발 1시간 전까지, 국제선은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를 타는 데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7 항공권은 비싼데 싸게 살 수 있는 다른 항공권은 없나요? 17

한국 국적의 국제 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친절하고 서비스(봉사)가 좋기 때문에 비싼 편입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값이 약간 저렴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의 저가 항공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가 항공사 대부분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동하는 국내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2009년 3월 일본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지역적으로 가까운 해외지역 노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예절

- 버스나 지하철에는 노약자나 임신을 한 여성이 앉을 수 있도록 표식을 해놓은 좌석이 있습니다. 노약자 배려 좌석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에게 양보합시다.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 혼잡한 경우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질서를 지킵시다.

## 1) 전화

### 1 일반전화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일반전화를 설치하려면 각 지역의 전화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국 안내번호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00번을 눌러 주십시오. 자동음이 나오면 지시에 따라 번호를 선택해 누릅니다. 잘 들으면서 상담원 연결 번호를 누르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이나 고장이 났을 때에도 100번을 누릅니다.

전화 요금은 한 달에 한 번 은행에서 내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이체방식'으로 내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방식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나면 그에 대한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요금입니다. 이 요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지요. (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관리비 등)



### 전국 지역번호

전국의 모든 지역에는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보통의 일반적 인 전화를 걸 경우에는 지역번호부터 먼저 누르고 실제 번호를 누릅니다.

서울 02	대구 053	강원 033	경남 055	경기 031
울산 052	충북 043	전북 063	인천 032	광주 062
충남 041	전남 061	부산 051	대전 042	경북 054
제주 064	세종 044			

### ‘인터넷전화’란?

인터넷망을 통해 일반전화처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도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회사에 먼저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번호 070을 사용합니다. 070은 우리나라 인터넷전화의 고유 사용 번호입니다.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 일반전화보다 전화 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시내 통화와 시외 통화, 다른 나라에 전화를 걸어도 일반전화보다 요금이 저렴합니다.

## 2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19

휴대전화(손전화)를 흔히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리점이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무조건 직원이 추천해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요금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불필요한 돈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휴대폰은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무심코 너무 자주 사용하면 뜻하지 않게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휴대폰 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휴대폰을 만들 수도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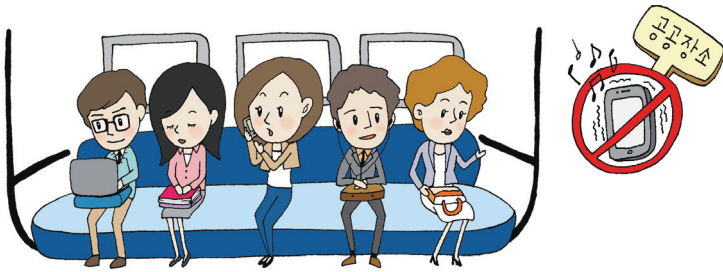
### ① 모르는 곳에서 전화나 문자가 자주 오는 경우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각종 광고 전화나 문자가 많이 오는데,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끊는게 좋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열어 보았다가 생각도 하지 못한 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의 광고는 해당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사용할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못한 방법으로 광고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 ② 휴대폰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것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통화할 때에는 작은 소리로 꼭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합니다. 극장이나 공연장 등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벨소리가 나지 않게 해둡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잠깐!  
만!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세요!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얻은 후 사기를 치는 것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경찰, 또는 은행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그럴 듯하게 흉내를 내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통장과 비밀번호는 36쪽, 신용카드는 63쪽을 참고하세요.)

최근에는 가족 중 한 명을 납치했다고 속여 그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새로운 수법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뭔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으세요.

## 2) 인터넷

### 3 인터넷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20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는 통신선으로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결망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편리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라고 하는 전자우편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편지나 각종 자료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의 사이트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정부기관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단체, 일반 회사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열차나 비행기의 표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이란 표를 살 거라고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것입니다. 돈을 다른 통장으로 보내는 일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 4 인터넷은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21

인터넷을 전문적으로 연결해 주는 통신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통신회사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학 기술을 적용한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주고 이용자들에게 그에 따른 돈을 받는 회사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이런 회사에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하고 사용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용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인터넷 사용 요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비교해 본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케이블 방송이나 전화와 인터넷 연결선을 함께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몇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데요?

인터넷은 인터넷망이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인터넷에 한글로 입력하면 그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매우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잘 모를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보세요. 인터넷은 매우 쉽고 누구나 짧은 시간에 배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텔레비전 방송

#### 5 남한의 텔레비전(TV)은 북한과 어떻게 다른가요? 22

북한의 텔레비전은 당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한의 텔레비전은 상업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신속성) 흥미로우며(오락성) 상품을 알리려는(광고성) 의도 등이 강합니다.

→ 상업성이란? 상품을 사고팔면서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 6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요? 23

##### ① 공중파 방송

어디에서나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보통 방송3사인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과 교육방송(EBS)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방송(KBS)은 공정한 방송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약간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

##### ② 케이블 방송

케이블이라는 전선을 이용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케이블 방송은 개인이 케이블 방송 회사에 따로 신청을 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 케이블 방송은 공중파 방송과는 다르게 요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합니다.



## 은행 이용



### 1) 은행이란?

#### 1 은행에 대해 알아보까요? 24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북한의 저금소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은행은 저금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금(은행에 돈을 맡기는 일)을 하면 그 돈을 자금으로 해서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남깁니다. 이것 외에도 금융과 관련한 많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금융기관이 은행입니다.

금융이란 것은 돈을 융통(돌려쓰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어 주거나 꾸어 온 원래 돈에 이자를 붙여서 주거나 받는 관계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 일반 은행 말고도 예금을 할 수 있는 농협(농업협동조합),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도 있으니 주위에 물어본 후 가까운 곳을 이용하십시오.



#### 이자란 무엇인가요?

이자란 돈을 주고받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 준 상대방에게 덧붙여 주는 돈입니다. 돈을 빌렸을 때에는 처음에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서 갚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려갈 때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은행의 통장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넣어두면 은행에서도 '이자'를 줍니다. 은행이 돈을 받은 쪽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돈을 맡겨 준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대가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돈을 붙여주는 것이지요.

#### ① 저축이 필요한 이유

돈을 꾸준히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보관합니다. 저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저축은 자신의 재산을 만들거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생겼을 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연로보장)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② 저축의 종류

저축의 종류와 예금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언제든지 돈을 넣거나 찾을 수 있는 저축도 있고 꾸준히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찾는 방식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이용합니다.

### ③ 대출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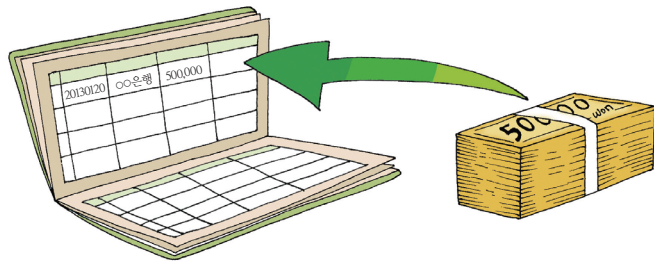
돈이나 물건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은행과 관련해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면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 하며 자신이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줘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갚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므로 은행에 잘 알아본 후 이용해야 합니다.

### 2 은행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25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은행을 통해 거래되는 것들이 매우 많아서 통장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축하는 일 이외에도 각종 요금을 내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돈(급여)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급여는 북한에서 받는 '로임'에 해당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받을 때에도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통장을 사용하면 기록이 남아요!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돈(현금)을 건네는 방법보다 은행의 통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 통장에는 돈을 주고받은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130120	전기세	35,000	자동납부
20130125	도시가스	62,800	자동납부
20130127	통급통	50,000	OO은행

## 2) 은행 이용 방법

### 3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26

① 은행에 들어가면 '번호표'를 뽑는 기계에서 숫자가 적힌 종이를 뽑은 후, 본인의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번호를 정하는 이유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볼 일을 마치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창구 앞쪽의 전광판에 자신이 뽑은 번호가 표시되면 직원 앞으로 갑니다.



③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고 안내에 따릅니다.

→ 통장 만들기, 돈 넣기(입금), 돈 보내기(송금), 돈 찾기(출금) 등

#### 4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up>27</sup>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다는 것은 은행에 자신의 계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좌를 마련하는 것을 흔히 '계좌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통장의 앞면에 사람마다 각각 다른 고유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계좌번호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자신의 도장, 저축할 돈을 챙겨 가까운 은행에 갑니다.

잠깐!  
মন!

#### 비밀번호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은행 직원에게 개인 통장을 만들겠다고 말하면 작성해야 할 서류를 줍니다. 통장을 처음 만들 때에는 자신만 알고 사용해야 하는 비밀번호를 정해야 해요. 비밀번호는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어야 하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는 돈을 찾을 때나 어떤 돈거래를 할 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5 은행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sup>28</sup>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지만 그 이후에도 이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은 직접 가지 않고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인터넷이나 전화를 사용해 자기 통장에서 돈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 물건을 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간이 자유롭고 편리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을 손에 짚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뱅킹** : 컴퓨터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은행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절차(순서)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은행에 찾아가 직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모르는 내용은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세요.

➔ 공인인증이란 것은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해요. 공인인증서는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텔레뱅킹** : 전화로 은행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텔레뱅킹은 통장을 만든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직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안전합니다.

## 6 은행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나요? <sup>29</sup>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계)로 현금(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은행 업무가 이 기계로도 거의 다 됩니다. 아침 9시 이전과 낮 4시 이후에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돈(수수료)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통장을 만든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할 때에도 별도로 약간의 수수료가 듭니다.

이 기계는 편의점이나 전철역, 물건을 살 수 있는 곳(마트나 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는 현금카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원에게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을 처음 만들 때 현금카드도 함께 만들어 사용합니다.



현금자동입출입기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방법

1)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번호표를 따로 뽑을 필요가 없고 줄을 서서 본인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봐서도 안 되며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 줄을 설 때는 앞사람 바로 뒤에 붙어 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자기 순서가 되면 기계의 화면을 보고 화면의 지시에 따릅니다.

①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잘 따라 하며 번호를 누릅니다. 돈을 찾거나(현금 인출) 돈을 저축하거나(현금 입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계좌이체)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를 기계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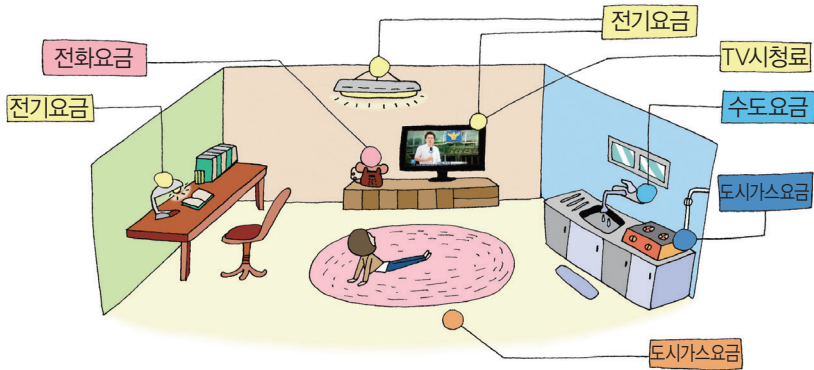
③ 입금액, 지급액 등 자신이 이용하려는 은행 업무를 화면의 지시 내용에 따라 조작합니다.

④ 거래 종료 후 반드시 카드와 거래명세표를 챙기고 첫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거래를 마친 후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버리고 싶을 경우에는 종이분쇄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합니다.

➔ 거래명세표는 돈을 거래한 금액이 적혀 있는 종이입니다. 종이분쇄기는 종이를 가루처럼 잘게 부스러뜨리는 기계입니다.

# 4 주거 이용



## 1) 공공요금 납부

### 1 공공요금이란 무엇인가요? 30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같은 것을 사용하면 국민 누구나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경우 서울과 지방,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가정용과 업소용 등에 따라 매월 검침 매월 부과, 격월 검침 격월 부과 등 다양합니다.

### 2 아파트 관리비는 무엇인가요? 31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데 드는 돈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보수비, 청소비, 경비원 월급, 기타 시설 교체 비용, 공동 전기, 수도 요금 등이 다 포함된 돈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는 돈입니다. 각 지역이나 아파트, 세대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2) 집 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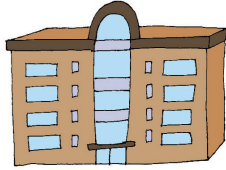
### 3 주거 형태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32

우리나라에서 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을 흔히 주택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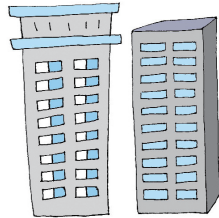
- ① **단독주택** : 한 채씩 따로 지은 집으로 북한의 '땅집'과 같습니다.
- ② **다세대 주택** : 4층을 넘지 않는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형태로 모든 세대가 방, 화장실, 부엌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아파트** :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입니다.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나눠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집입니다.
- ④ **오피스텔** : 겉보기에 아파트와 비슷한데, 집처럼 생활하면서 동시에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또는 연립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집을 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돈을 주고 집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라는 것을 받는데 이것에도 전세와 월세의 형식이 있습니다.

#### 4 전세와 월세가 있다는데요? 33

집세는 집을 얻는 데 필요한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미리 일정한 액수의 돈을 맡겨두는 돈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보증금 외에 더 내는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① 전세

남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전부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전세는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더 오래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시세에 따라 얼마간의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세입자(집을 빌린 사람)가 원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계약을 깰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처음에 냈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보증금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② 월세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집 사용료(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보다는 훨씬 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돈을 줘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달 내는 월세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사는 지역과 집이 얼마나 넓고 좋은가에 따라 비용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과 서로 뜻이 잘 맞으면 주인이 처음에 말한 금액보다 약간은 줄여서 낼 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월세도 계약에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 요금, TV·인터넷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을 빌린 사람이 매월 사용한 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 보증금

물건이나 집 등 빌리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게 맡겨두는 돈입니다.

➔ 다만 일부 집의 형태(단독주택에서 월세 등)에 따라 월세에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에 분명히 확인하여 돈을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잠깐!

이사를 할 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달 내는 월세는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5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34

집을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때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로 써서 기록을 남겨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말로만 계약하고 돈(보증금)까지 받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거주할 기간, 보증금 액수, 월세 금액 또는 전세 금액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서류를 떼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6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요? 35

최소한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더 살 것인지, 아니면 이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집주인은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그 집에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이란 본래 계약기간보다 기간이 길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가 뭐지?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집주인의 이름, 주소, 집의 면적과 구조, 그 집과 관련해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지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는 집 같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대해 업무를 보는 곳이며,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종이에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임대할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등기부 등본 (현재 유효사항) -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00-5 (주소) | 고유번호 1143-1006-231411

① 표 제 부				(건물표시)	
표시번호	일 수	소재지인 및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현 1)	1984년7월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00-4	월간연리부조 명승레스토랑 1층 148.66㎡ 2층 148.66㎡ 3층 148.66㎡ 외벽면적 148.66㎡ 피감 14.14㎡	도면면적상 제2계제419상	
② 갑 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일 수	등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당 1)	소유권보존	1984년7월11일 제200421		소유자 홍길동 407010-11111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00-4 동505아파트 1층 101호	
③ 을 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일 수	등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당 1)	임대차설정	1990년6월12일	1990년12월20일	전세금 220,000,000원정	

\* 물건번호, 그이전 부합은 표시사항을 표시함. \*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부 또는 용구는 생략함.  
 발행번호 11430114031090601090221152.80101420080313040411111 1/2 발행일 2002/06/21

계약할 주소의 소유자를  
다시한번 꼭 확인한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설정하며  
등기할 수도 있다.

## 7 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36

### 〈집을 얻을 때 순서〉

- ① 원하는 거주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집을 소개 받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 ② 등기사항증명서 등 앞서 말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③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입주일(이사를 하는 날짜)과 계약금액(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계약기간 등을 적고 확인합니다.
- ④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줍니다. 보통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미리 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계약금입니다.
- ⑤ 이사를 들어가기 전 중간에 얼마의 돈을 또 집주인에게 건네는 중도금이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잔금은 이사(입주)하는 날에 주인에게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도금 없이 입주하는 날 한꺼번에 내기도 합니다.
- ⑥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 ⑦ 이사한 후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나. 확정일자

- 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기 위해 집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만일 전세나 월세로 이사온 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순서에 따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전입신고 할때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본인(임차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수수료 600원입니다. 다른 사람(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 경매란? 법원이 부동산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매각(물건을 파는것)하는 제도입니다.

## 8 살 집을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던데요? 37

길거리, 텔레비전(TV), 신문 등의 광고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며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직접 소개를 받는 방법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소개업소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집을 소개해 주고 확인할 사항을 대신 확인해 주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도 대신 준비해 줍니다.
- 그 대신 요금을 내야 합니다. 집을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게 해준 대신 흔히 '복비' 라고 부르는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잠깐!

## 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개업소도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말로만 듣고는 믿지 마세요. 나쁜 피로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집주인을 확인하고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써서 증거를 남겨 둡니다.

### 9 처음에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죠? 48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까지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하는 날까지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습니다.

대체로 미리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면 1개월 치 월세만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까지 거주했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최소한 1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집주인이 아직 사람을 못 구했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9

주택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지은 건물입니다. 분양이란 것은 땅이나 건물 같은 것을 나누어 파는 것을 말하지요. 임대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①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소득이 적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나라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싸고 빌려주는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이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소득이 적은 계층에 싼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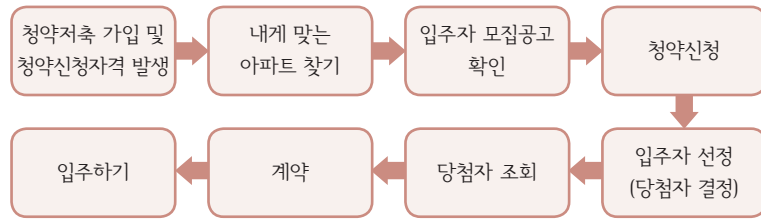
#### ② 공공분양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개발공사 등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③ 민영분양주택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구분 없음)으로 정부의 별도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를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아파트 분양 받는 절차



일반적인 분양절차 외에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분은 특별(우선적으로)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음)이어야 하며, 단독 세대주의 경우 40㎡ 이상의 임대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특별분양의 경우 청약저축 6개월 이상, 6회 이상을 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기타 세부기준(신청 가능 지역, 청약 예치금 등)은 관련 법 규정 및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잠깐!  
알고!

#### 청약과 청약저축

- 청약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신청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생각이 있으면 미리 주택을 사고 싶어 한다는 내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을 청약,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가입시 지역별 예치 금액에 따른 주택 규모를 선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민영분양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것은 은행에 가서 물어보세요.

### 3) 쓰레기 분리수거

#### 11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릴 수 없다면서요? 40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개인이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지정된 봉투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지역마다 분리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정착한 지역의 이웃에게 또는 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원의 교육관과 생활관에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쓰레기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기간부터 신경을 써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① 일반 쓰레기

생활하는 중에 생겨나는 일반적인 쓰레기(휴지, 작은 종이류 등)는 쓰레기 전용 봉투를 구입하여 처리합니다.

#### ②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그릇이나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 ③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의 물기를 뺀 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전용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합니다.

④ 재활용품

종이, 신문, 박스, 유리병, 캔, 플라스틱 제품 등은 정해진 날짜에 따로 내놓고, 옷, 신발, 가방, 이불 등은 지정된 의류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과자 봉지도 재활용이 되는 것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버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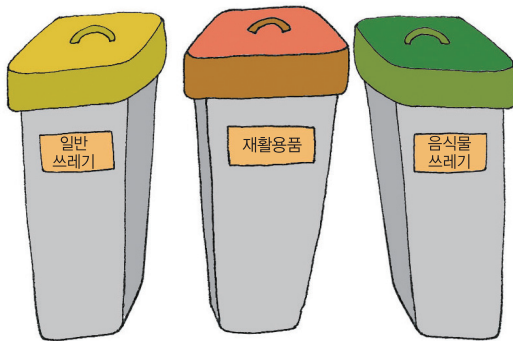


⑤ 가전제품이나 대형 쓰레기

못쓰게 된 가구나 텔레비전(TV), 냉장고 등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사다가 붙이고 집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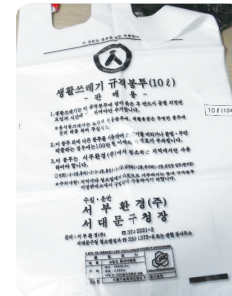
아파트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지정한 날짜에 내놓아야 합니다. 분리한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일반 주택보다는 편리한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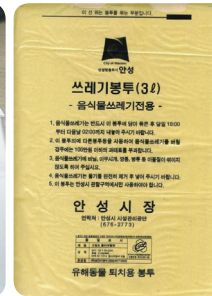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뭐예요?

쓰레기봉투는 거주지 인근 슈퍼마켓 또는 할인 마트에서 살 수 있어요.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색깔이 다르고 각 동네마다 쓰레기봉투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담을 수 있도록 5ℓ(리터), 10ℓ(리터), 20ℓ(리터), 30ℓ(리터) 등으로 나뉘어 있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재사용 쓰레기 봉투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는데 시장바구니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쇼핑을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쇼핑 겸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합니다. 묶음을 담아서 사용한 후에 그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구입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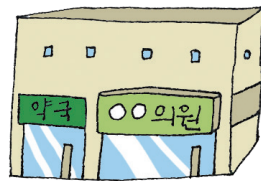
## 병원 이용

남한에서는 병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1 병원은 규모에 따라 구분이 된다면서요? <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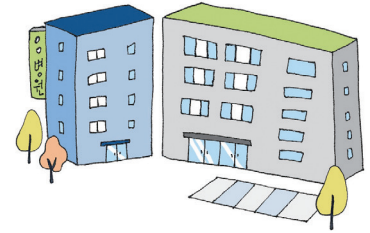
#### ① 1차 병원(북한에서의 진료소에 해당)

대부분 1~2명의 의사가 환자(아픈 사람)를 치료합니다. 내과나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등 진료 과목이 하나인 병원들도 많고 '○○의원' 형태의 의원에서는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가지 과목을 보기도 합니다. 1차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해 줍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도 대표적인 1차 의료기관입니다.



#### ② 2차 의료기관(구역병원 군병원 규모)

종합병원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입원시설도 갖춘 병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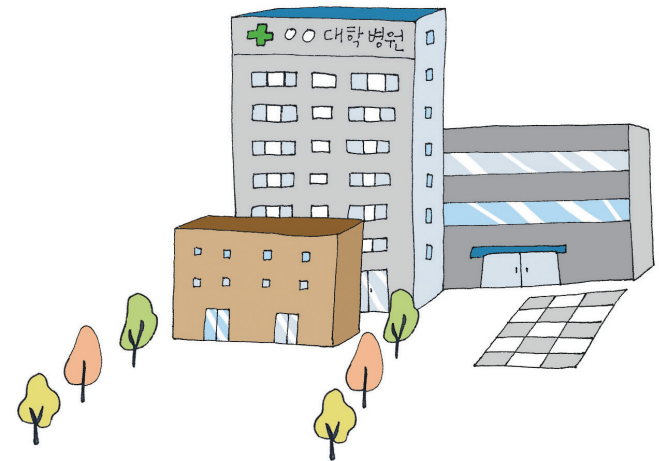


#### ③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도병원, 시병원 규모)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이나 특수병원, 국가에서 지정,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2, 3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보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감기가 들었을 때에는 큰 병원에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병원(의원)으로 가면 큰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데 돈이 적게 듭니다.



3차 병원을 가면 1차 병원과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의 진료비는 2~3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병으로는 1차 병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의료급여증(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을 꼭 가져가야 하고, 진료 후 약을 타기 위해 약국에 갈 때는 병원에서 써준 처방전과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2 병원에 따라 단계별로 진료 형태가 다르다면서요? <sup>42</sup>

큰 병원일수록 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부터 이런 진료 과정에 대해 경험을 해가며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 〈단계별 진료 형태〉

- ① 1차 진료기관 방문(보건소, 의원, 보건지소)
  - ② 2차 진료기관 방문(준종합 병원,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
  - ③ 3차 진료기관 방문(대학병원, 특수병원 - 국가 운영 결핵병원, 정신병원)
- ➔ 다음 단계로의 진료시 반드시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남한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나 방법도 시장, 백화점, 할인마트,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인터넷 쇼핑, 텔레비전 홈쇼핑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장마당과 유사한 우리의 시장은 북한처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나뉘기도 하고 시장에 따라서는 파는 물건 자체가 유명한 곳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많은 양의 물건을 놓고 파는 곳이나 도매시장 등은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주지의 물건을 파는 곳을 잘 알아두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 1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sup>43</sup>

### ① 시장

남한에서의 시장은 주로 재래시장을 말합니다. 주로 북한의 장마당과 비슷한 옛날 형태의 시장을 가리킵니다. 서울은 각

동네마다 재래시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건의 양이나 가격을 흥정할 수 있고 남한의 서민(일반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방에는 5일장이 지역마다 다른 날짜로 열려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을 팔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장을 통해 그 지역만

의 문화나 생활상을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 ② 백화점

각 지역의 대도시마다 있으며 팔지 않는 물건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의류(옷)나 식료품(먹을거리), 가전제품(전기를 사용해 집에서 쓰는 온갖 전기제품), 보석, 화장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팝니다. 백화점은 시설이 좋아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매우 친절하며 물건의 질이 대체로 좋기 때문에 값이 시장이나 다른 곳보다 비싼 편입니다.

가격은 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정찰제’입니다. 정찰제인 곳은 값을 깎아달라고 흥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곳에서도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자주 하는 세일 기간(원래의 물건 값에서 10~50% 등으로 싸게 파는 기간)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세일 기간이 길고 깎아주는 가격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③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처럼 깔끔하고 편리하게 꾸며 놓은 건물에서 시장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먹을거리와 옷, 가전제품, 화장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지만 백화점처럼 비싼 값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싼 물건도 있고 약간 비싼 물건도 있으며 백화점처럼 값을 깎아주는 할인 기간을 두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알뜰하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대형 할인

### 장가! 장가! 유명한 시장?

- 서울의 전문적인 도매시장  
- 노랑진 수산시장(수산물), 청량리 경동시장(농산물, 약재 등), 동대문 시장(의류, 천, 단추 등 관련 부속품), 종로 통인시장, 인사동시장(전통 공예품), 남대문 시장(생활필수품)
- 전국적으로는 정선5일장, 구례5일장, 안동5일장, 충주풍물시장 등 많은 5일장이 있음.



노랑진 수산시장



동대문 평화시장



청량리 경동시장



안동 5일장

마트의 물건은 날개보다는 몇 개씩 묶음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며칠 동안 쓸 물건을 한 번에 사갑니다.

#### ④ 동네 슈퍼마켓(가게)

사람이 사는 동네(마을)마다 가까이 작은 규모의 가게가 있습니다. 북한의 상점과 비슷한데, 이곳에서는 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물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바로 살 수 있습니다.

#### ⑤ 24시간 편의점

동네의 슈퍼마켓과 비슷한 물건을 팔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24시간을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24시간 편의점

## 2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면서요?<sup>44</sup>

### ① 인터넷 쇼핑물

물건을 사거나 장을 보는 것을 이곳에서는 흔히 '쇼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실생활에서의 가게(상점)나 시장처럼 물건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다음 물건 파는 곳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 곳들이 나오는데 그곳을 '쇼핑몰'이라고 부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돈부터 먼저 내야만 배달을 해줍니다. 가게에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이라도 집까지 배달해 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집까지 가져다 주는 데에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배달 비용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결정합니다.



### 택배 주문 배송

물건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보고 설명을 읽으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파는 사람이 제 각각 달라 가격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그 물건을 써 본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 평가를 적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고를 때에 참고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주문을 하면 집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파는 물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실제 물건과 컴퓨터 화면의 사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② 텔레비전 홈쇼핑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가 있어서 흔히 ‘홈쇼핑’이라고 부릅니다. 텔레비전(케이블) 방송을 보면 물건만 파는 채널(방송국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번호)이 따로 있습니다. 홈쇼핑 방송에는 쇼핑호스트라고 불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상품(팔 물건)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어 사고 싶을 때는 전화로 그 물건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도 식품부터 의류, 주방용품, 가전제품, 관광여행 상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 홈쇼핑 방송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자꾸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도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불필요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능한 한 빨리 구입한 물건이 배송되기 전에 물건을 산 곳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도록 하세요.



###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

물건을 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구입한 물건을 바꾸거나 돈으로 다시 돌려받을 때에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고 포장이나 가격표 등을 떼지 않고 7일~15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구입한 물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 문의, 신고

- 한국 소비자원 ☎ 02-3460-3000, 인터넷 [www.kca.go.kr](http://www.kca.go.kr)  
- 소비자시민모임 ☎ 02-739-5441, 인터넷 [www.cacpk.org](http://www.cacpk.org) 또는 [www.consumerskorea.org](http://www.consumerskorea.org)

구입 구매 전후 피해예방 요령을 알고 싶을 경우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www.ccn.go.kr](http://www.ccn.go.kr)

## 3 물건을 사고 돈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up>45</sup>

### ① 현금

물건을 고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내는 방법으로 적은 액수의 돈은 보통 현금으로 냅니다.

### ② 텔레뱅킹

전화를 이용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37쪽을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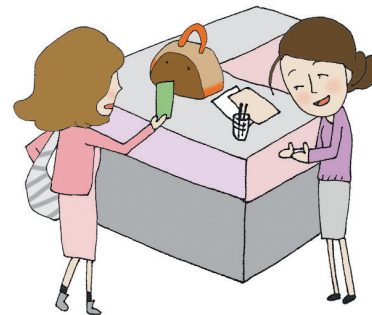
### ③ 인터넷뱅킹

인터넷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37쪽을 참고하세요)

### ④ 카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도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물건을 사고 나서도 현금 대신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백화점이나 마트 이외에도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쇼핑

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고자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를 처음 만들 때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자세히 알아본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현금카드**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돈을 넣을 때 또는 자신의 통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현금을 옮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38쪽을 참고하세요)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단,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당장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에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사서 쓰고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의 카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 편한 방식이긴 하지만 돈이 없는데 미리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빚을 지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란?(신용불량자 혹은 신용유 의자라고도 함)

채무불이행자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나 전기요금 미납 등 세입 체납 등의 경우에도 신용이 나빠집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 원 이하 2건 이상을 연체한 경우에 대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라는 곳과 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새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도 중지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물건을 싸게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46

일반적으로는 거주지 주변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건의 종류나 양, 질에 따라서 시장이나 백화점 등에서도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비교를 하거나 알아본 후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한은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있고 약간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물건만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모아놓고 파는 전문 시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가에서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

-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  
용산 전자상가, 강변역 테크노마트, 하이마트 등
- 각종 공구제품  
구로, 영등포, 안양 등에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 오토바이  
서울 퇴계로, 대구 중구 등에 '오토바이 상가'가 있습니다.
- 가구  
서울 아현동, 경기 고양, 경기 마석, 인천 남동공단 등의 가구 단지가 있습니다.
- 주방용품 등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지요.

## 머리 손질과 몸단장

예를 들어 옷을 사려고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옷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어 비교적 값이 저렴한 동대문시장을 이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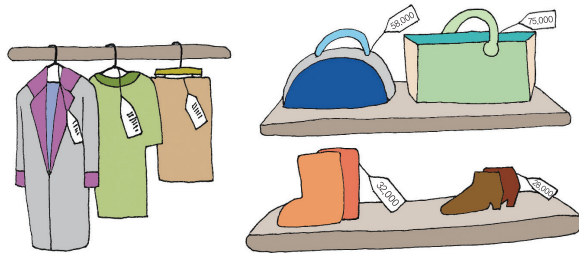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비교적 싸게 구입할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격비교'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값이 가장 싼 곳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5** 중국에서는 가격 흥정을 많이 했는데 남한에서는 왜 값을 깎아주지 않나요?

혹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그런 것인가요? <sup>47</sup>

북한이탈주민이라서 깎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에 따라 주인(사장)이 직접 장사를 하는 곳도 있고 직원이 장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직접 물건을 파는 곳은 자신의 가게이므로 상황에 따라 조금은 깎아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장은 상인과 손님 사이에 물건 값의 흥정이 오갈 때가 많지만 백화점이나 일반적인 가게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깎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형 할인마트는 이미 할인(값을 내린)된 가격으로 팔고 있고 백화점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일 기간(값을 깎아서 파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1) 머리 손질

북한의 편의봉사소와 비슷한 시설로 남한에는 그 종류나 시설이 다양하고 금액도 그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지역이나 시설 규모 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 머리를 손질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지요? <sup>48</sup>

지역에 따라 값이 다르고 대도시라도 위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이발소(리발소)

남성 전용으로 이발과 면도 등을 해주는 곳입니다. 자신이 어떤 서비스(봉사)를 받았는가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 ② 미용실

과거에는 여성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곳이었으나 최근에는 남성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고 미용실에서는 손톱 손질(네일아트)이나 화장 등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이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미용실의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큼니다. 동네의 개인 미용실은 값이 싼 편이고 시내의 큰 규모의 미용실은 값이 비싼 편입니다.

규모가 큰 찜질방의 경우에는 피부관리실, 영화관, 마사지(안마)실, 식당, 수영장, 정원 등까지 갖추고 있어 복합오락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용 요금은 시설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규모가 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 복합공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습니다. 부대시설(식당, 피부 관리 등)을 이용하는 요금은 따로 내야 합니다.

## 2) 목욕

### 2 목욕하는 곳도 종류가 매우 많다고 하던데요? 48

대중목욕탕은 가격이나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우나, 찜질방, 스파 등은 기본적인 목욕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목욕만 하는 대중목욕탕도 있지만 최근에는 목욕과 함께 휴식공간, 수면실, 여러 종류의 찜질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으며 목욕시설만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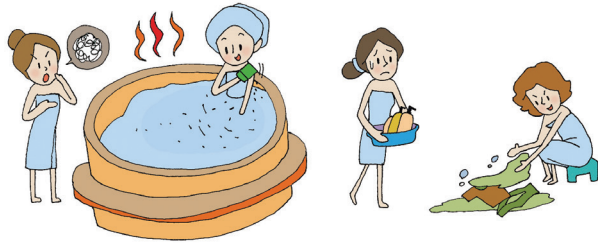


### 대중목욕탕 이용할 때 주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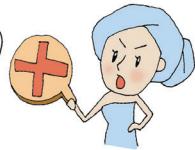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볍게 몸을 씻습니다. 머리를 먼저 감고 욕조에 들어가면 머리 카락이 덜 빠집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한증막, 열탕(뜨거운 물), 냉탕(차가운 물) 등을 이용합니다. 한증막은 높은 온도로 몸을 덥게 하여 땀을 내게 하는 곳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욕탕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목욕탕에서 빨래를 하서는 안 되고, 욕조 안에 들어가서 때를 밀어서도 안 됩니다.



## 외국 출입



### 1) 외국 방문

#### 1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데요? 50

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여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을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구조(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는 것)를 요청(원하는 행동을 청함)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여권은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각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시·군·구청의 여권발급 부서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1매,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있는 양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10년, 5년, 5년 미만의 3종류로 나뉘며 발급수수료는 각각 53,000원, 45,000원(7세 이하인 경우 33,000원), 15,000원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사증란이 24면인 알뜰여권이 나와서 48면에 비해서 3,000원 가량 싸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을 방문할 때는 여권과 함께 사증(비자, VISA)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자는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는 증명서입니다.



비자 신청은 그 나라의 한국주재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그 나라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몇몇 나라에 갈 때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발급한 비자(VISA)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방문의 경우에는 비자가 없어도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단, 비자가 없어도 되는 조건은 짧은 기간 동안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학을 가거나 다른 일로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2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나요? 51

북한이탈주민도 기본적으로 일반 남한 사람과 똑같은 절차(순서)와 정해 둔 규정대로 여권을 발급받으면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나갈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 사회정착 초기에는 해외출국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이민을 허용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1.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여권과에 갑니다.



2. 여권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발급 수수료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접수증을 받습니다.

5. 접수증에 적힌 발급예정 날짜에 다시 방문하여 여권을 찾습니다.  
(약 3일~1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여권안내를 이용  
인터넷 [www.passport.go.kr](http://www.passport.go.kr) ☎ 02-733-2114

## 2) 외국 취업

### 3 나중에 중국에 진출해서 한식점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sup>52</sup>

중국에 대한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돈을 들임)나 사업은 일반 남한 사람들과 같이 모두 가능하지만 중국에서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등이 있는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변의 안전과 기타 위협 요인을 이유로 입국(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일본에 살면서 취직할 수 있나요? <sup>53</sup>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며,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법무성 입국 관리국의 '체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내국인의 실업률 증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으로 외국 인력 그 중에서도 단순인력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분야는 전문기술 분야와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기능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돈을 버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 1 북한이탈주민들이 위반하기 쉬운 법질서에는 무엇이 있나요? <sup>54</sup>

남과 북의 법체계와 문화가 달라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교통법규 위반과 폭력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교통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행동)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교통법을 잘 모르거나 음주단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말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위반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봐주지는 않습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특히 남한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매우 엄하게 처벌합니다.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기사(이동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름)를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은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 돈을 받고 대리운전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전화번호를 알아두면 좋아요. 대리운전을 해주는 회사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란, 차의 주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② 폭력

대부분의 경우 언어와 문화가 달라 오해가 생겨서 우발적(우연히, 충동적으로)으로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 2 법을 잘 몰라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곳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번호사단'이 전국 14개 본부 및 지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번호사단'의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국 지부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02-3215-5800)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문의처

단체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3	02-3476-4008
서울지방변호사회	02-3476-6000	02-3476-8091
인천지방변호사회	032-861-2170	032-861-2171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031-216-0646	031-212-6363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031-872-2707	031-872-5309
강원지방변호사회	033-256-8321	033-243-8321
충북지방변호사회	043-284-9683	043-285-9683
대전지방변호사회	042-472-3358	042-472-3359
대구지방변호사회	053-753-1900	053-751-6006
부산지방변호사회	051-506-8500	051-506-8511
울산지방변호사회	052-267-6633	052-267-6637
경남지방변호사회	055-266-0606	055-266-0607
광주지방변호사회	062-222-0430	062-222-1305
전북지방변호사회	063-252-7710	0505-299-7568
제주지방변호사회	064-751-1402	064-725-111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02-3215-5800	02-3215-5729

### 3 북한이탈주민도 군대에 가나요? 56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법 64조에 의한 병역면제대상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각 지역의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 기본증명서(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제출 절차〉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 날짜가 되기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

-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 18세 이전에 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며 40세 이상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병역면제대상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문의 : 병무청(☎1588-9090)

## 1) 행정기관

### 1 서류를 떼 오라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57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공공기관은 아마도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며 여러 증명서 발급과 필요한 신청 서류 작성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찾으세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거나 관련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시·군·구청의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 또는 총무과 등의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부록 196쪽 참고)

## 2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요? 59

최근에는 굳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거나 업무 시간 이외에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의 민원발급기계, 인터넷(www.minwon.go.kr)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 신청 서류는 각 행정기관 인터넷에 들어가서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민원신고
- ➔ 본인의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위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의료급여 신청 등 관련 업무

### 〈시·군·구청〉

- 주민센터의 상위 기관으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도 함
- 여권 신청 발급, 자동차 등록, 세금 관련 업무 등

## 2) 경찰서·파출소·소방서

### 3 경찰서와 파출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신고전화 112번) 59

사기, 폭력이나 강도 사건 등 범죄자를 잡는 업무를 하거나 교통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업무, 관내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 등을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12를 누르고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말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찰서는 지역별로 있고 파출소(지구대)는 북한의 분주소와 비슷한 기관으로 동네에 따로 나와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기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해당 거주지의 경찰서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이라는 경찰이 근무하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 4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하라는데요? (신고전화 119번) 60

남한에서는 불이 나거나 응급한 환자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 할 때 119번을 누르면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나 응급구조차가 출동합니다.

불이 났을 때는 정확한 주소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응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가급적 119구조대가 올 때까지 상담원과 통화하며 응급조치를 듣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우체국

#### 5 편지나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요? 61

우체국에서 국내나 해외로 편지나 소포(우체국 택배)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국내 우편 및 택배>

- 우체국의 택배는 보통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 배달을 시작, 거리에 따라 도착일이 다릅니다. 직접 우체국으로 가서 접수해도 되지만, 전화로 미리 접수하면 택배직원이 원하는 곳으로 물건을 가지러 옵니다. 택배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택배도 많습니다. (예: 한진택배, 로젠택배, CJ대한통운택배 등)
- 이용요금은 배달하는 지역에 따라 값이 다르고 택배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편물 기준보다 초과(기준이나 한도가 넘음)한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 요금을 더 냅니다.



### 〈국제 우편 및 택배〉

- 편지나 물건을 전 세계 130여 개의 국가로 배달합니다.
- 무게는 한 박스에 최고 30kg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취급하는 무게가 다를 수 있고 보낼 수 없는 물건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관련문의 : 우체국(☎1588-1300)

### 6 우체국이 은행에서 하는 일들도 한다는데요? 62

우체국에서는 각종 예금이나 요금을 내는 일 등 은행에서 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문의는 ☎1588-1900으로 전화 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4) 도서관

### 7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63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시·군·구)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책이나 신문, 잡지, 시청각 자료(영상물, 사진 등)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열람할 수도 있고 자료를 대출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면 무료로 자료를 볼 수 있고 대출할 수도 있지만 복사를 할 경우에는 복사 비용을 내야 합니다.

### 8 큰 규모의 도서관은 어디에 있나요? 64

- 국회도서관
  - 자료실 이용 : 월요일~금요일 09~18시(야간 도서실은 18~22시), 토요일~일요일 09~17시
  - 휴관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공휴일
  - 필기도구를 제외한 개인 물품은 보관함에 넣고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고 들어갑니다.
  - 위치 :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5번 출구(걸어서 15분), 9호선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걸어서 5분)
- 국립중앙도서관
  - 자료실 이용 : 월요일~일요일 09~18시(야간 도서실은 18~22시)
  - 휴관일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공휴일
  - 필기도구를 제외한 개인 물품은 보관함에 넣고 들어갑니다.
  - 위치 :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걸어서 15분)  
7,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역 5번 출구(걸어서 10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제2장

## 정착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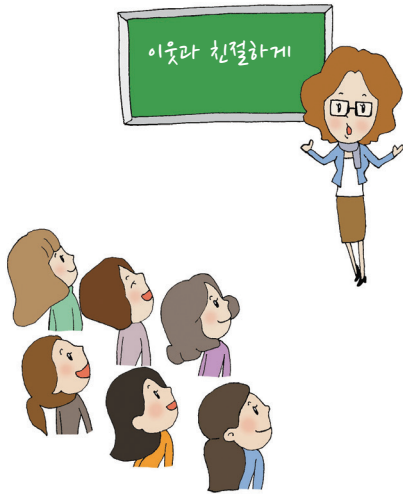
1. 하나원 교육
2. 가족관계등록
3. 주거 지원
4. 정착금
5. 취업장려금
6. 교육지원금
7.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8. 거주지역에서의 보호제도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 지원

# 1 하나원 교육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 들어와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도 돌봐주며 북한과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달라진 환경에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내용(12주, 총 392시간)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8시간)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공통130시간/특화35시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공통122시간/특화35시간)	초기정착 지원 (5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검사·상담, 건강검진, 체육활동 등</li> <li>건강하고 행복한 삶</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성검사, 진로지도, 단기집중 직업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li> <li>역사, 국어, 외래어</li> <li>실생활 위주의 현장 체험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의지 함양</li> <li>정착지원제도 안내</li> </ul>

\* 특화교육으로 진로교육 및 우리사회 교육 중 택일하여 35시간 운영하며 자율참여형 보충교육을 별도운영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주말 시간에는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원에 머무는 동안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형성, 거주지(주택, 살림집) 배정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초기 정착금을 주는 등 남한 사회에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정착금이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다 마친 이후에는 정착에 필요한 각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가산금, 정착장려금, 교육지원금 등 해당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비나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34쪽)를 참고하세요.

## 가족관계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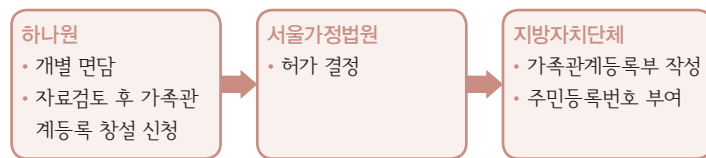
가족관계등록제도란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 및 가족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이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 1) 가족관계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 국적법 제2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앞으로 살 곳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마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사람들과 똑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만드는) 절차



### 1 조선족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하나원 수료 후 어떻게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나요? 65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다 받은 후에 출생신고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광역시는 구청, 그 외 지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중국에서 정식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어머니 또는 기타 아기의 출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분만관련증명서 또는 중국기관 발행 증서등본(증명 등사본)을 갖고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채 출생한 경우라면 아버지를 표시할 수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출생 신고 시에는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 하나원 수료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때에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785/5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선족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국 국적이라 호적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up>66</sup>

중국에 있는 중국국적의 남편과 아이는 중국의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중국여권과 한국영사관·대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한국입국비자를 미리 준비해야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국적의 남편과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로서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 남한 입국 및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국번 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에서 조선족과 결혼하려면?

- 조선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 중국법적으로 조선족의 혼인가능 서류가 있어야 해요.
  - 중국의 관공서 및 재외공관 등에서 발행
- 각 서류를 갖고 거주지 시·군·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남편이 조선족인데 남한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싶어요. 국제결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sup>67</sup>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 국민으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곳에 사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국제결혼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예규 650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컨대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제결혼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공판실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증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2) 개명****4** 제 신분이 알려져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sup>68</sup>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해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할 경우에는 왜 이름을 바꾸고 싶은지 소명(이유를 밝혀서 적는 것)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소명자료에 북한에서 왔음을 밝히고 본인과 가족의 신변상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개명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개명 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개명을 허락해 주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9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자녀 등), 기본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 개명할 이름자료 등도 같이 준비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은 후에는 1개월 안에 결정등본을 첨부하고 개명신고서를 주소지의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 3) 결혼

### 6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에 가서 국제결혼을 하고 살 수 있나요? 70

물론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그 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이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혼인증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귀국 후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7 북한에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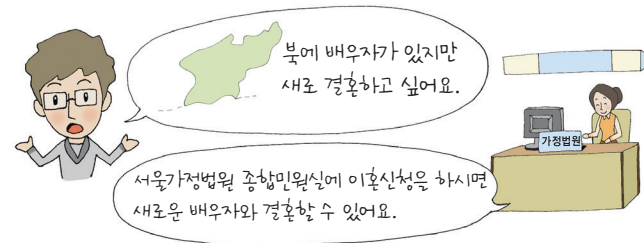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는다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신청은 어떻게?

2006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2(이혼의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 북한에 배우자를 둔 북한이탈주민들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명(이유를 밝히는 것)자료 등의 서류를 갖고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6)



## 주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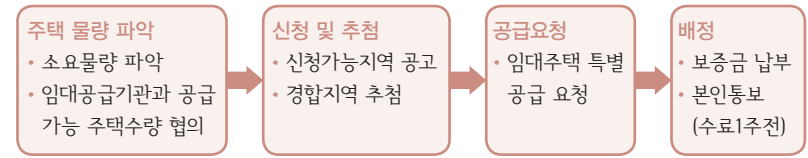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1) 주택 지원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가족의 수에 따라 전용면적 25㎡부터 85㎡이하의 임대주택을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착지원법에 따른 것이며, 될 수 있는 대로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임대는 빌려준다는 뜻으로, 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이 살 집을 정부에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주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20세가 된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배정 절차



#### 5인 이상 가족 추가알선 제도(정착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 2009년 1월 31일부터 보호 결정된 5명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알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알선이란 다른 사람의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 위의 규칙이 시작되기 전에 이곳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가족도 단 한 번은 추가로 알선이 가능하지만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갈 때 주택 배정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초 하나원을 통해 배정받은 집에서 2년간 계약을 깨뜨릴 수 없도록 하는 특약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약이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을 말합니다.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과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다르게 바꿀 수 없습니다.

**소유권** : 물건의 전부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낸 사람이 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 :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다만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에 규정된 이유에 한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새롭게 들어와 살게 된 북한이탈주민 중 개인에게 사정이 생겨 사는 곳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권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한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어 북한이탈주민들과 경쟁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http://www.lh.or.kr))의 공고를 보고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이 직접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주택 공고 내역 보는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 [www.lh.or.kr](http://www.lh.or.kr)  
→ 입주계획, 입주안내 참조하세요.
  - 도시개발공사(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http://www.i-sh.co.kr)  
→ 장기 전세주택임대주택 현황 참조하세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posarang.or.kr](http://www.dongposarang.or.kr) ☎02-3215-5700)  
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보증금 등의 비용은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 1 배정을 받은 임대 아파트를 2년 이내라도 계약을 깨뜨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②



특약해지사유(거주지보호지침 제8조)

1. 임대공급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4.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 직장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 직장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6.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로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직장장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7.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8.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10.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11.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만, 통일부장관은 5호, 10호의 사유로 특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해지한 때부터 2년간 수도권지역에 대한 우선 공급 및 특별분양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이를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대상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위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거주보호담당관에게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를 발급받아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동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같은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계약과 해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거래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이란, 당사자끼리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계약을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없애는 거예요.

무엇이든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계약서를 써서 문서로 남겨두면 계약이나 해지에 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 2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의 이름이 다양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73

임대주택은 누가 그 아파트를 지었느냐에 따라 국가에서 지은 공공임대와 일반 회사에서 지은 민영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있습니다.(49쪽을 참고하세요)

### ① 영구임대

임대기간이 50년 정도 되고 대부분 지은 지 오래된 경우입니다.

### ② 국민임대

임대기간이 30년 정도이며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임대주택은 대다수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정하는 아파트는 거의 국민임대주택입니다.

## 3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74

임대보증금이란 임대료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에 미리 내는 돈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그 지역의 땅값, 건축비용, 언제 지어졌는가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전국 임대주택 임대료는 매우 다양하고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을 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새롭게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과거에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비쌉니다.



###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료 차이

영구임대와 국민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최근의 땅값과 건축 자재의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을 건설할 때 이러한 것을 임대료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4** 하나원 수료 이후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sup>75</sup>

임대주택은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단 한 번만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이후에는 결혼이나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주택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5** 주택을 포기·반납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주택을 다시 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sup>76</sup>

주택을 반납한다는 말은 없고, 주택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을 모두 '해지'라고 합니다. 주택을 해지한 이후에는 하나원이나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주택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남한의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서울 시의 경우는 SH공사)에 임대주택신청서를 낸 다음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 국민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택이 없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신청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문의 : 서울 SH공사(☎1600-345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00)



하나원에 있을 때 세대가 결정돼요!

'보호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하나원에서 교육 중일 때 가족세대가 결정됩니다. 세대는 혼자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배정해 주는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호결정 당시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세대로 결정이 되었지만, 둘이서 나중에 같이 살기로 하고 한 명이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택을 알선할 때에 한 명이 자신에게 배정된 집을 포기하고 하나원을 수료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하나원 수료 이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더라도 주택을 포기했던 사람에게는 다시 주택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을 배정하는 것은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단 1번뿐입니다. 따라서 집을 포기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살던 임대주택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전세로 집에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요? <sup>77</sup>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결정되지만 지역의 문화수준, 교통, 학교, 시설 등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등에 따라 값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7** 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요? <sup>78</sup>

임대주택은 정부가 집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싼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여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8** 돈을 마련하여 집을 사고 싶습니다.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요? <sup>79</sup>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싼 값에 주택을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보금자리주택(108쪽 참고)'을 공급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히 분양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http://www.dongposarang.or.kr>)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배정받은 거주지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sup>80</sup>

거주지 배정을 받고 나서 임대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우선 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 배정권은 남한에서 어렵게 사는 주민들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이 먼저 임대주택에 배정받게 된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배정받은 거주지에서 살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주지 아파트와 임대계약을 하지 않으면 주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임대계약을 하고도 살지 않는다면 매월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하고 임대주택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 해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7)

## 4

## 정착금 (※2013년 개정)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착지원금은 기본금과 주거지원금, 지방거주장려금, 일정한 조건(연령, 한부모아동보호, 장애, 장기치료)에 따라 지원하는 가산금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 1) 기본금

기본금은 초기지급금과 분할지급금으로 구성됩니다. 초기지급금은 하나원을 수료하는 그날에 지급되고 분할지급금은 수료 후 분기별로 월말에 세 번에 나눠 지급됩니다.

####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세대	기본금 <sup>1</sup>			주거지원금 <sup>4</sup>	합계	비고
	초기지급금 <sup>2</sup>	분할지급금 <sup>3</sup>	소계			
1인	400	300	700	1,300	2,000	<sup>1</sup> 기본금 : 1년간 분기별 지급 <sup>2</sup> 초기지급금 : 하나원 퇴소시 지급 <sup>3</sup> 분할지급금 : 수료 3개월 후 분기별로 3회 지급 <sup>4</sup> 주거지원금 : 실입주 보증금 지원, 잔액은 5년후 지급
2인	500	700	1,200	1,700	2,900	
3인	600	1,000	1,600	1,700	3,300	
4인	700	1,300	2,000	1,700	3,700	
5인	800	1,600	2,400	2,000	4,400	
6인	900	1,900	2,800	2,000	4,800	
7인이상	1000	2,200	3,200	2,000	5,200	

### 1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해도 정착지원금 지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sup>81</sup>

하나원을 수료한 뒤에는 본인이 결혼이나 이혼을 하는 등 환경에 변화가 생겨도 정착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착금은 보호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했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추후 보호결정이 취소되어 이미 지급받은 정착지원금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폭언(난폭한 말)을 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각종 정착지원금, 집 등은 어떻게 되나요? <sup>82</sup>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이 된 사람은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착금 등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 3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 경우에도 정착금이 나오나요? <sup>83</sup>

정착금이 지급되는 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하면 정착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착금을 지급받는 당사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와 가족 구성원 일부가 나가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정착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잃어버렸거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84

정착금 통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거주지 근처에 있는 정착금 통장의 은행(농협 등) 지점을 찾아가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착금 통장이 있는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면 됩니다.

## 2) 주거지원금

#### 5 주거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85

주거지원금의 금액규모는 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호결정(세대결정) 당시 결정되며, 사회 편입 시 임대주택 보증금은 하나원에서 임대아파트의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에 지급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남은 주거지원금 나머지 액수는 하나원에서 나간 뒤 5년이 지난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합니다. 다만 5년 이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빠른 시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토지나 건물 등을 나누어 파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 \* 보금자리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의 액수가 늘어난 경우
- ③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잔액 신청은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com)  
→ 참여마당 → 주요공지사항

#### • 신청서류

가. 하나원 퇴소5년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 해당), 통장 사본

나.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 임대계약 : 신청서, 계약서 사본, (계약금)영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 해당), 통장 사본, 임대아파트 해지신청서 및 해지확인서
- 전환보증 : 신청서, 계약서 사본, 납부영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 해당), 통장 사본
- 재계약 : 신청서, 계약서 사본, 납부영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 해당), 통장 사본
- 영농임차지원 : 신청서, 영농임차지원대상자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납부영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 해당), 통장 사본, 임대아파트 해지신청서 및 해지확인서
- 주택매매 : 신청서, 계약서사본, 계약금납부영수증 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 해당), 통장사본, 하나원에서 받은 이전주택 해약확인서 또는 해약신청서,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복합1통)

- 보내실 곳 :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하나원 교육기획과(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

- ④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신축, 수선하는 경우  
**임차** 돈을 내고 남의 물건 등을 빌려 쓰는 것  
**구입** 물건을 사들이는 것  
**신축** 건물을 새로 만드는 것  
**수선** 낡거나 험 물건을 고치는 것
- ⑤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내에 주거용 일반주택의 매매 및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전세임대(전환)의 목적으로 주택 매매 대금 및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3) 지방거주장려금

#### 6 지방에 살면 장려금이라는 돈을 받는다면서요? 36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각지의 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방거주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거주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com)  
 → 참여마당 → 주요공지사항

-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세대구성인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통장 사본
- 보내실 곳 :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하나원 교육기획과(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 **가**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지급대상에서 제외
- **나** 지역 :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주거지원금의 10%
- **다** 지역 : '가' 지역과 '나'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주거지원금의 20%

#### 7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지방거주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37

- ① **가**지역에서 **나** 또는 **다**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거지원금의 0%
- ② **나**지역에서 **나**지역 또는 **다**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10%
- ③ **다**지역에서 **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0%
- ④ **다**지역에서 **나**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10%
- ⑤ **다**지역에서 **다**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20%
- ⑥ **나** 또는 **다**지역에서 **가**지역으로 이동 후, **나** 또는 **다**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0%입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031-670-9350 / 팩스 031-672-959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00)



## 4) 가산금과 보로금

### 8 사람에게 따라 지원을 받는 돈이 더 있다면서요? 88

가산금은 원래 금액에 덧붙여서 더 주는 돈입니다. 가산금에는 하나원 교육 중에 신청하여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연령가산금, 한부모 아동보호가산금이 있으며, 사회에 진출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장애가산금, 제3국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이 있습니다.



장애·장기치료가산금 신청은 이렇게!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접속한 후 전자 민원 → 민원안내 → 인도지원

- 장애가산금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 해당), 통장 사본
- 장기치료가산금 : 신청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 해당), 통장 사본
- 보내실 곳 :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하나원 교육기획과(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031-670-9350 / 팩스 031-672-959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00)

### 가산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비고
연령가산금	만60세 이상	720(개인당)		하나원에서 신청
한부모아동보호가산금	만13세 미만의 편부모 (보호아동 대상)	360(세대당)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	400(자녀 1명당, 2명이내)		*하나원 수료 후 관할 하나센터로 신청
장애가산금	장애등급	1급	1,540	하나원 수료 후 신청
		2~3급	1,080	
		4~5급	360	
장기치료 가산금	「본인일부부담금특례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중증질병으로 연속 3개월 이상 입원	개월 × 80 (최대 9개월 720만원, 일시불 지급)		

가산금 신청 및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됩니다. 지급시기는 분할지급금 지급 종료 후 거주지보호기간까지 4년간 분기별로 지급되며 한 사람(동일인)에 하나의 사유만 인정합니다.

### 9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면 돈을 더 받는다고 하던데요? 89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었을 경우에는 '보로금'이라는 돈을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중요한 정보나 장비를 제공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2억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6)

# 취업장려금 (※2014년 개정)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일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거주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되며, 신청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센터에 신청할 경우 지급됩니다.

##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구분	취업장려금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신청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핵심내용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근무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서 작성	▶▶▶ 제출	고용센터 (1차 접수) ▶▶▶ 이송
지급요건	거주보호기간 중에 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일부(하나원) (접수 및 처리)



정착지원법령 개정(11.29 시행)으로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

## 1 취업장려금은 누가, 언제,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요? 90

거주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거주보호기간(5년) 내에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 단, 거주보호기간 내에 취업을 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번에 한해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 필수가입)

'14.11.29 이후 거주 보호기간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한 경우 이에 따른 취업장려금 수급 가능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현행 거주보호기간 5년에서 최대 2년 연장, 거주지 전입 후 5년 이내 → 최대 7년 이내) \* 출산 횟수별 1회씩 최대 2년까지 적용(취업장려금 신청시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산증명서 첨부)

##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

구분	지급기준	177기 이후(13.4.30 하나원 수료자)	
		수도권	지방
취업장려금 (단위 : 만 원)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00	250
	1년차	450	550
	2년차	550	650
	3년차	650	750

\* 수도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중 1개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경우

\* 지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장소재지 모두가 기간중 계속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경우

**잠깐!** 6개월 차 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이 안 되어 퇴직했을 때
- (수도권의 경우) 최초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차 장려금 450만 원 대신 6개월 장려금을 2회(회당 200만 원, 총 400만 원)에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지방의 경우) 최초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차 장려금 550만 원 대신 6개월 장려금을 2회(회당 250만 원, 총 500만 원)에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취업장려금은 취업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신청하며, 예외적으로 6개월 차 장려금은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장려금을 2년 치나 3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 신청해도 되나요? <sup>91</sup>

2년 치나 3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업장려금 신청 요건이 됐을 때 1년 단위로 신청합니다. 다만, 6개월 차 장려금을 받고 싶으시면 6개월 단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해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sup>92</sup>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동일한 회사에서 고용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무기간산정에는 휴직·실직 등의 기간을 배제한 실제 근무기간으로 합니다.

- ①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가 3개월 안에 다시 취업한 경우  
**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폐쇄** 회사가 문을 닫고 더 이상 회사 운영을 하지 않는 것  
**임금체불** 월급(로임)을 주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  
**감원** 직원 수를 줄이는 것
- ③ 기간제(일하는 기간을 정해 놓음)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3개월 안에 다시 취업한 경우
- ④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장을 잠시 쉬었다가 나오는 경우
- ⑤ 병(산업재해 포함)이 나서 직장을 쉬었다가 다시 나와 일을 하는 경우  
 → 산업재해란 근로자(노동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병이 나서 몸에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잠깐!**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에게 사정이 생겨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직장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회사로 옮겨서 다니고 있는데 이걸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그만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사정에 속합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8)

## 교육지원금

교육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비를 면제·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해당 학교에서 학비를 면제하며 대학에 진학하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비를 면제하고 사립대학은 정부에서 학비의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고등학교	만 24세 이하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 등을 해당학교에서 졸업시까지 면제
대학	일반대학 (4년제) 교육대학	<b>&lt;지원 내용&gt;</b> • 국·공립대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해당학교에서 면제 • 사립대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b>&lt;지원 기간&gt;</b> • 처음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단 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b>&lt;지원 제외·제한대상(사립대학만 해당)&gt;</b>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보조 제외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점은행제 학교 등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연령제한 없음



### 편입학

첫 학년에 입학하지 않고 학기 중간에 들어가 공부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취직 후 야간에 대학을 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나요? <sup>93</sup>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진학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학에 입학한 후 남한의 학생들과 경쟁하며 정상적으로 졸업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남한에서 결혼하여 자녀가 생기면 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94

교육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만 면제·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이나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대상자로 정부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별도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각자 필요한 학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 3 북한이탈주민이면 교육지원금으로 남한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전혀 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인가요? 95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교육지원금은 초·중·고등학교의 학비, 대학교의 등록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급식비(학교에서 나눠주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돈), 수학여행비나 대학교의 각종 교재비, 수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모두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 4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만두고 다른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도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96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기간은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지원하고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A라는 학생이 B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졸업한 후,

C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등록금은 6년의 범위에서 B대학에 지원받은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까요.

- ① A라는 학생이 B일반대에 2012년 3월에 입학하여 2학기를 다니다가 2012년 12월경에 그만두고, C일반대에 2014년 2월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 2016년까지 6학기를 마친다면,
  - 5년동안 8학기를 마쳤으므로 등록금을 면제·보조받을 수 있지만 입학금 또는 편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② A라는 학생이 B전문대를 2013년 3월에 입학하여 2015년 2월에 졸업한 후, '15년 3월 C일반대(4년제)에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 해당 학생이 C일반대 입학시 만 34세 이하이고 4학기가 남아있다면 C일반대에서 2018년까지 나머지 4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되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총 8학기의 등록금만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자비로 내셔야 해요.  
(급식비, 각종 교재비 등)



##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미래행복통장은 회사에서 일하여 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통일부가 지정한 은행에 저축할 경우, 통일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보호결정자로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단 미래행복통장 가입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2014년 11월 29일 입국자부터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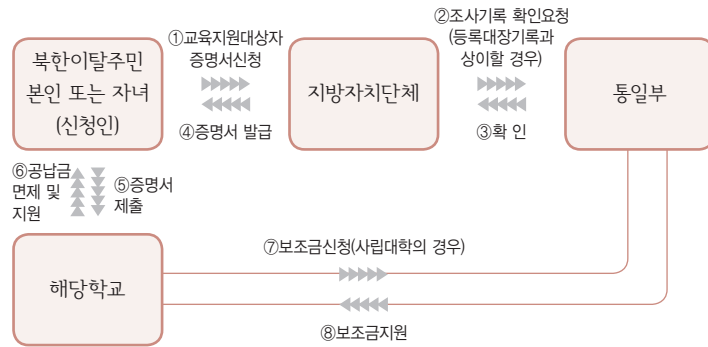
### 1 미래행복통장의 지원범위와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97

본인 근로소득의 30% 이내(10~50만원이며 5만원 단위)에서 본인이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시 약속한 저축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그 달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통일부에서 지원해줍니다.

기본 2년간 저축을 해야 하며, 기본 2년이 끝났을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저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 거주지 보호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 2) 지원 절차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1)

저축금액을 중간에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감안하여 저축액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저축한 달은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 달은 나중에 한꺼번에 저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미래행복통장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복한이탈주민은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희망 내일키움통장,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등 유사사업에 이미 가입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자
- 취업한 사업체의 대표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업에 취업
- 신청자 본인이 자영업자
- 약정상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를 하여 중도 해지
- 타인 명의로 가입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경우

## 2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 그러한가요? 98

의무금융교육 이수, 미저축 횟수 제한을 넘기지 않고 저축 달성,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및 사용용도 충족, 그 외의 다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는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6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시중은행 이자만 받게 됩니다.

- ① 약정기간 만료 시(계약 만료일) 기초생계급여수급권자인 경우
- ②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저축을 한 경우
- ③ 지원금을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 훈련비 △사업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결혼비용,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④ 약정기간 내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입기간 동안 1회 이상)
- ⑤ 본인의 중도해지 요청
- ⑥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한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관련문의 : 남북하나재단(☎1577-6635),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부록의 하나센터 현황 표 참고)

## 거주지역에서의 보호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해당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을 잘 알아두면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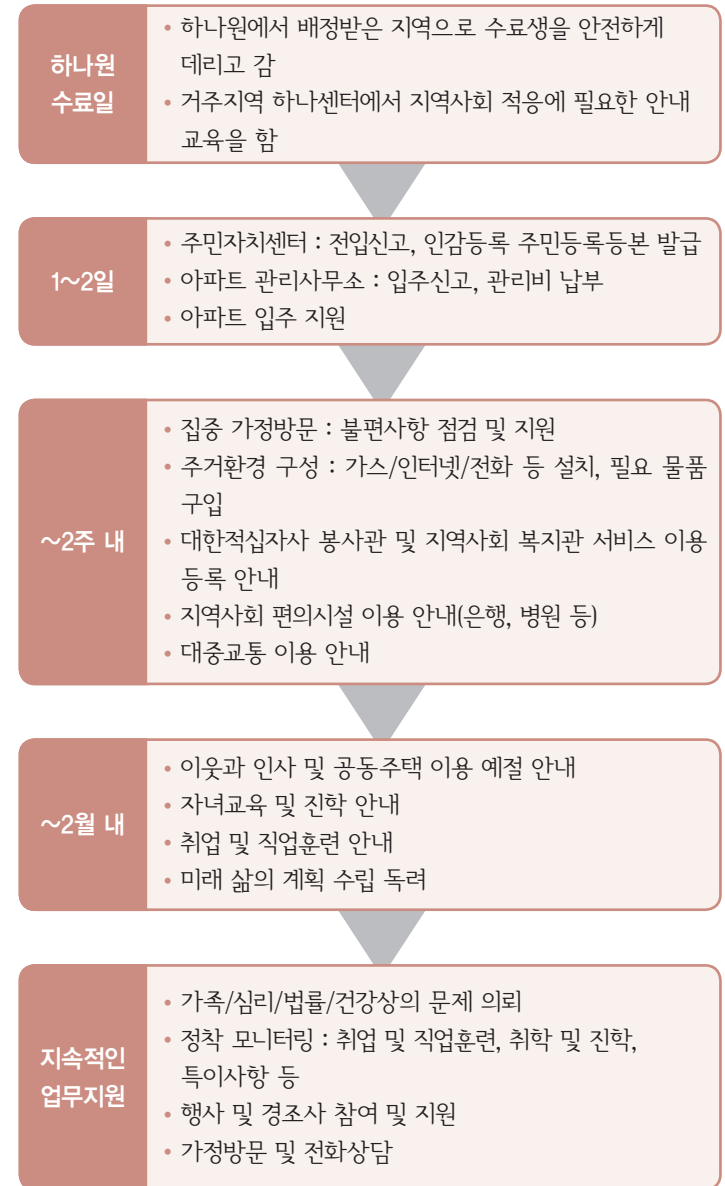
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해당 거주 지역에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등 기본적인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하나원 교육을 끝내고 나가면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나요? <sup>99</sup>

#### ① 정착도우미 제도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안내를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제도입니다.

#### 정착도우미 업무 처리 절차





## ② 초기 집중 교육

- 교육기간은 하나원 수료 후 최초 2주간 60시간입니다.
- 하나센터 관할 지역에 최초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단, 18세 이하, 65세 이상의 고령자, 주거미배정자 등 제외합니다.
- 교육 내용은 지역 적응에 필요한 내용, 즉 취업·지역사회적응·정서안정·지역 현황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③ 지원 기간

- 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한 직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집중교육 외에도 취업 상담, 검정고시 안내, 생계·의료급여 절차 및 내용 안내, 심리 안정 및 생활법률 안내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배정을 받은 지역으로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0

### ① 주민등록 신고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의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하나원에서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6)

## ② 의료급여 신청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재산상태, 경제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자격이 되면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을 합니다.(30일 정도 소요)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서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는(30일 정도 기간)임시 의료급여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습니다. (상세한 의료급여 내용은 137페이지 참고)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관리후생과 하나의원(☎031-670-9336)

## ③ 장애인 등록증 발급(해당자에 한함)

전입신고(새 거주지로 옮겨 온 것을 알리는 일) 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장애인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진(규격 2×3cm) 2장, 주민등록증)

발급된 장애인증 서류를 갖고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2부 필요)를 받은 후 다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총 2부가 필요합니다. 1부는 장애인증 발급용이며 1부는 하나원에 내는 추가 가산금 신청용입니다. 결정된 장애인 등급에 따라 하나원에 추가로 장애가산금을 신청합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팩스 031-672-9591)

## ④ 아파트 입주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도시개발공사(SH공사), 지방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계약을 마치고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의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본인 집의 열쇠를 받습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7)  
거주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부록 192쪽 참고)

⑤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각 동의 수위실) 방문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⑥ 전화 신청

일반전화 사용은 지역번호 없이 100번을 누르고 신청하면 지역 전화국에서 접수를 합니다. 휴대전화(휴대폰)는 거주지 주변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가입 신청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5쪽 참고)

### ⑦ 벽지·장판을 교체해야 할 경우

아파트 주변의 상점 중에서 지물포(벽지 등의 종이를 파는 곳)나 인테리어(실내 장식)하는 상점에 문의하여 집의 상태를 보가며 결정합니다.

## 2) 보호담당관 제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내에서 보호기간(5년) 동안 각종 행정절차나 취업지원, 신변 안전에 대해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3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어떤 것들을 도와주나요? 101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지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움을 줍니다. 거주지 내에서 행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합니다.

각 시·군·구청에 따라 부서는 자치행정과 또는 총무과 등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부록 194쪽 참고)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는 무슨 일?

- 주민등록 신규 등록, 정정(잘못된 것을 바로 고침) 및 말소(없애는 것) 신고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입신고(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기초생계비), 장애인 등록 신청 등

#### 4 취업보호담당관이 해주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sup>102</sup>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관할 거주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취업 소개, 직업훈련 안내, 진로 상담 등을 담당합니다.

취업장려금신청서, 취업신청서 등을 접수하는 것 등을 도와줍니다.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소개해 주고 안내와 상담을 해드립니다.  
(부록 202쪽 참고)

#### 5 신변보호담당관도 있다면서요? <sup>103</sup>

신변보호담당관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sup>104</sup>

- 전문상담사는 하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적응과 상담 지원을 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해 줍니다.
- 남한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정부(☎02-3215-5811~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 생계급여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 수급 특례를 적용합니다.

➔ 특례 제외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같으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최저생계비 :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는 현금 기준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사람의 소득(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현금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례제도란?

- 생계급여 지급 기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세대)는 5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는 3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기준  
- 생계급여는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세대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1인 세대인 경우는 2인 세대로, 2인 세대는 3인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세대는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0)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생계급여 선정 기준(2017년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 2,331,973원)

\* 상기 생계급여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것이며, 동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sup>105</sup>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 구성에 따라, 본인의 세대에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지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제도 혜택은 하나원을 수료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sup>106</sup>

하나원 수료 이후부터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나 수급기간 동안 세대원의 수가 달라지거나 재산과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본인이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조사에서 최저생계비보다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는 혜택이 중지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허위나 부당하게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받았던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 처음 거주지를 배정받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sup>107</sup>

새로 옮긴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초생계비가 그대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sup>108</sup>

아르바이트라고 말하는 것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부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생계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044-202-3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의료급여

**5** 의료급여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sup>109</sup>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 적용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타법적용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진찰·검사비, 약품, 처치·수술 등)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보험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C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의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시·군·구청의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인터넷(www.minwon.go.kr)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급여 1종은 의료보험 범위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100% 국가가 부담을 하고 의료급여 2종은 진료비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해당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신청자 본인의 건강이나 경제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6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sup>110</sup>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취업하면 북한이탈주민 취업특례적용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특례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회사 취업후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급여 담당자에

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배 이상이거나 자가용(150만원 이상, 1600cc이상)차량을 보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제외합니다.

## 7 하나원 수료 후에 의료급여 대상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나요? <sup>111</sup>

거주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보험이 되는 종목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진료 받았을 때는 거의 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면 병원진료비, 약값, 단순한 엑스레이 촬영은 보험의 혜택을 받아 몇 천 원의 돈만을 내지만 초음파 검사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내야 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종목을 비보험 진료비라고 하는데 비보험의 종류로는 특수검사(초음파, MRI촬영 등), 치과보철, 성형수술, 고의적 사건사고, 선택 진료비 등입니다.

## 8 하나원 수료 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sup>112</sup>

의료급여 대상자가 병원 입원을 할 경우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원기간 동안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입원

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보건소는 어떤 곳인가요? <sup>113</sup>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을 주 업무로 하며 내과, 치과, 정신과, 한방과, 소아과 등을 설치·운영합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있어 심리상담, 정신질환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국민연금

### 10 국민연금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sup>114</sup>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해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 국내에서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합니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 11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특례 가입이라는 것은 뭔가요? <sup>115</sup>

하나원에서 보호결정을 받을 당시의 만 50세부터 59세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의 특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 신청, 연금을 받을 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인터넷 [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 혹은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 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 사회에의 적응에 필요한 종합정착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기정착지원, 주거 및 의료지원, 취업 및 교육지원, 민간단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 1 장기를 이식할 때에도 지원을 해준다면요? 116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간, 심장, 췌장, 신장 등)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되, 본인부담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기를 제공한 기증자(북한이탈주민)에게도 발생한 의료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2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는데요? 117

구분	내용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당해 연도 질병으로 치료받은 자</li> <li>• 일반질환 : 입원기간 3일 이상,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 납부</li> <li>• 만성·중증·희귀성 질환 : 입원, 외래 치료 시 본인 부담금 월 30만원 이상 납부</li> <li>* 만성·중증·희귀성 질환 : 보건복지부 질병코드 해당자</li> <li>• 출산(1일 이상)·불임치료·출산으로 입원하여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납부</li> </ul>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한방) 질환 : 연 2회, 본인 부담금의 30%, 최대 200만원</li> <li>• 출산, 불임치료 : 연 1회, 본인 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li> <li>• 만성·중증·희귀성 질환 : 횟수 무관, 본인 부담금의 50%, 최대 700만원</li> <li>• 장기 이식 : 1인 1회, 본인 부담금의 50%, 최대 1,000만원</li> </ul>
제출서류	신청서, 입·퇴원확인서(원본),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단서(원본), 수술확인서(원본), 본인통장사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1회)
제출기간	퇴원일 기준 3개월 이내(당해 연도 신청자)
처리 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6주 이내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외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보청기 등)</li> <li>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산하병원, 기타 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 금액만큼 삭감</li> <li>③ 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li> <li>④ 출산인 경우 산후조리 비용, 성형목적의 성형외과 치료비용</li> <li>⑤ 한방병원 : 첩약비용, 상급병실비용, 세부내역이 없는 투약비용</li> <li>⑥ 질병과 상관없는 비용(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등)</li> <li>⑦ 약국의 약제비</li> <li>⑧ 입원기간 중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검사비용(MRI 등)</li> </ol>

관련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정부(☎02-3215-5764), 콜센터(☎1577-6635)





잠깐!  
진실이 아니면서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안 돼요!

신청서류(입원확인서 영수증 등) 중 허위(거짓)사실로 판명될 경우는 그로부터 3년간 지원을 중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3. 초과지원도 가능한가요? <sup>116</sup>

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 1인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단, 부분틀니, 임플란트, 뼈이식술, 보철 및 충치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4. 장학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려 주시겠어요? <sup>119</sup>

-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중고교생,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연 2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비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 및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장학금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 대학원생 : 직전 학기 성적 90/100 이상, 최대 200만원
  - 대학생 : 직전 학기 성적 75/100 이상, 최대 200만원
  - 중·고생 : 정규과정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최대 80만원

### 5.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sup>120</sup>

물론 있습니다! 만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의 탈북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출생, 남한출생 포함)를 대상으로 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원하는 1개 과목을 지도하는 학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을 꼭 챙겨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세 이상 탈북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출생, 남한출생 포함)를 대상으로 원어민에게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화상영어지원 사업도 있으니,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개발부(☎02-3215-5754)

### 6. 농사를 짓거나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지원도 하나요? <sup>121</sup>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통한 농업기술 습득지원, 초기 영농시작을 위한 운영자금지원(비료, 종묘, 사료 등), 영농조합법인 설립 지원, 자금신용대출 보증료 및 재해보험료 지원 등 영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는 창업희망 업종의 기술습득, 창업자금 조성 지원, 창업교육,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창업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02-3215-5827, 5771), 콜센터(☎1577-6635)



잠깐!  
낮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꼭 도움을 받으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낮선 환경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마련한 여러 교육과정이나 강좌 등에 참여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koreahana.or.kr](http://www.koreahana.or.kr)  
콜센터상담 전화 1577-6635

# 제3장

## 직업과 교육



1. 직업의 의미 및 직장생활
2. 직업 관련 정보
3. 직업훈련과 취업
4. 한국의 교육제도
5. 진학 지원

# 1 직업의 의미 및 직장생활

다른 환경에서 살다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새로 배우고 익히고 적응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원의 교육을 마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서의 직업관(직업의식)을 갖고 우리의 직장 문화를 알고 그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1) 직업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직업은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1 직업이 개인적으로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12

#### ① 직업을 가져야 생계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한다는 것은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계속 삶을 이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라에서 따로 배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필수품은 개인이 스스로 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직업을 갖는 것이 생계유지에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 ② 직업은 소속감을 줍니다.

한국은 어떤 직업이든 가져야 먹고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동안, 그 조직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면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두고 공감대를 갖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공감대를 가지면서 마음에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 ③ 직업을 통해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소질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직업을 통해 개인이 바라는 고유한 가치(부, 명예, 권력, 자아실현 등)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까요?

부 : 넉넉한 생활, 넉넉한 재산

명예 :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권력 :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

자아실현 :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뤄내는 일

→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직업을 통해 갖고자 하는 가치 또한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 2 직업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가요? <sup>123</sup>

직업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어느 사회에든 소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먹고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일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각자 자신의 일을 할 때에 그 사회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에 만족하면서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아닌 것은 어떤 것들이가요?

-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소작료 등과 같은 재산 수입을 얻는 것
- 경매, 경륜 등으로 인한 배당금 수입을 얻는 것
-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등의 법을 어기는 행위

## 2) 남북한의 직장생활 차이

### 3 남한과 북한의 직장생활은 어떻게 다른가요? <sup>124</sup>

북한의 직장(공장, 기업소 등) 문화는 노동 도중에 예술선전대의 공연이 있는 등 휴식시간이 많고 비교적 느린 속도로 일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로는 직장에 일이 거의 없고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출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직장 환경에 비해 남한의 직장생활이나 문화는 북한과 매우 다릅니다. 대체로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말하기를 남한 직장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말을 합니다. 직장의 정상적인 노동시간이 끝나더라도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휴일(쉬는 날)에도 급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무한 경쟁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적 특성상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직장인들 모두가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잠깐! 무한 경쟁이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겨루는 것이 경쟁이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쟁에 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경쟁에 국가나 사회가 따로 개입하지 않으며 개인이 노력해서 목적인 것을 이뤄내고 지켜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따로 없는 경쟁, 즉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 자본주의 사회와 기업에 관한 내용은 154쪽을 참고하세요.

남한은 각 고용주(기업소 주인)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뽑을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 해고란, 주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을 국가에서 배치해 주고 연료보장도 해주지만 이곳에서는 직장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기업소 주인)가 말하는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

### ① 누구에게나 당당하라!

같은 회사(기업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편하게 하는 말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서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관리자에게 이곳 동료와 똑같이 혼나고도 자신이 더 혼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높은 사람 있을 때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북한이탈주민들은 관리자들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해야 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지 않으면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보든지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③ 먼저 베풀고 남이 주면 고맙게 기꺼이 받아라!

북한이탈주민은 남에게 받는 것도 싫어하며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같은 회사(기업소)에서 일을 하는 동료끼리 서로 밥을 사주기도 하면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커집니다.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어울리는 것이 이곳의 직장생활입니다.

### ④ 관리자의 지시에 일단 따르라!

관리자가 일을 지시할 때 말대꾸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지시를 받으면 일단 대답을 한 후에 자신의 의견은 나중에 예의바른 태도로 말하도록 합니다.

### ⑤ 모르는 것은 당당히 물어보라!

사람은 누구나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을 새로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것일 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물어봐서 불편함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남한의 직장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sup>125</sup>

직업에 대한 애착과 열정, 일을 하는 능력, 직장 내의 대인관계(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관계), 성실성, 책임감 등입니다.

회사도 조직이므로 동료나 상사 등과 다툼 없이 잘 지내야 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내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 자본주의 사회와 기업

##### 자본주의 사회

자본은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기계, 시설 등이나 그것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돈을 벌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북한과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윤이란 쉽게 말해 판매수입에서 생산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남은 돈입니다.

회사(기업소)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직원을 채용(사람을 골라서 쓰는 것)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합니다. 누가 볼 때만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 5 직장에 다니게 됐는데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깠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up>126</sup>

남한의 직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깠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잘해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쪽 사람들도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찾거나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와 예절 등이 달라서 오해가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일을 대하는 자세 또는 태도에 의해 서로의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것은 그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도 북한주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모습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처음에는 낯설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곳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은 직장의 목적, 즉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직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에 관계없이 남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 1) 근로

## 1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121

근로자(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란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해 둔 약속을 말합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사람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기업소의 주인이 직원을 뽑습니다. 이 기업소의 주인을 고용주라고 부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맺는 계약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로임), 근로시간 등 중요한 사항을 적어서 기록에 남겨둡니다. 서로 말로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말한 것과 다르게 대우(돈이나 지위 등의 근로 조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본인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남한에서는 모든 계약을 할 때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을 하라고 자신을 뽑아준 고용주가 별 이유도 없이 돈(임금)을 줘야 하는 날에 주지 않으면 지역의 고용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증거로 내세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2 근로시간(노동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22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여 놓은 법률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요. 이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은 일주일에 기준근로시간(휴식시간 제외)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휴식시간은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 주어집니다.

9:00~18:00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 총 8시간 근무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연장, 야간,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 임금의 1.5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19:00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 총 8시간 근무



## 2) 임금(북한의 '로임')

### 3 임금은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지요? 29

최저임금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해놓고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하도록 법률로 정한 금액입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1시간당 6,470원이며 주5일 근무 시(1일 8시간 근무) 월 135만 원입니다.

#### 장가! 임금 계약의 종류

시간제,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임금을 일 년 단위로 계산하여 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방식)가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은 월급제가 많고 건설업에는 일당제가 많습니다.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근카드를 찍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다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직장에서 낮에 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더하면 월급은 어떻게 주나요? 30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근로'(정해진 노동시간 이후까지 연장하여 일을 하는 것)를 하면 기본임금(북한의 '로임')의 50%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라 하면 정해진 근로시간(1일 8시간)이외에 추가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0%의 가산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 3) 출산 전·후 휴가

### 5 아기를 낳으면 출산휴가도 주나요? 31

근로자(노동자)가 임신한 경우에 아이를 낳기 전이나 후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동안 휴직(직장을 쉬었다가 나옴)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남, 여 근로자에 모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이 되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40%를 최저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과 취업

### 1) 취업지원 현황

시행제도	시행기관	주요 내용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 무료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 수당 지급
취업알선,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지원
취업알선, 취업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전국 23개 하나센터에 직업상담사를 지정,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등을 지원
학력·자격인정	통일부 (해당기관)	• 관계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자격 인정
사회적 기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활성화 및 운영지원
창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창업희망자에게 교육·경영컨설팅·대출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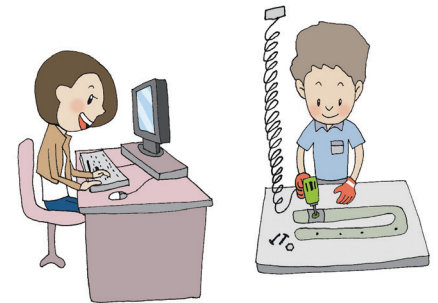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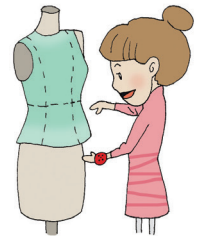
### 2)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직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적응이 중요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인(5년) 동안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실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고용주) 지원 직업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수강지원금</li> <li>•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배움카드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li> </ul>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직업훈련의 경우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수강생은 이 계좌에 지급된 훈련비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주지(살고 있는 곳)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묻고 상담해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지원제도

구분	북한이탈주민		③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도 ①②외의 경로로 훈련참가시 ③에 해당)
	①독자반 참가자	②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훈련비 지원 (한도액)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본인 부담	면제(없음)	면제(없음)	20~40%
훈련 수당	취약계층과 동일	취약계층과 동일	일반 수강생과 동일
참가 가능한 훈련과정	북한이탈주민 독자반으로 개설되는 일부 과정	전체 직업훈련 (※단, 담당자와 면담하여 해당 훈련에 참가가 가능한지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함)	전체 직업훈련

※ 전국 고용센터 안내 : <http://www.work.go.kr/jobcenter>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안내 : <http://www.hrd.go.kr>

### 1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sup>182</sup>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요건 충족시에는 훈련수당(정해진 액수 이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지 않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나라에서 따로 직업훈련수당을 주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 2 취업을 하고도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sup>183</sup>

직업훈련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이고 ‘실직자 직업훈련’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이 있으므로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면 실직자가 된 것이므로 다시 ‘실직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취업알선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지원 제도
  - 취업보호담당관(전국 56개 고용센터 지정·운영)
    - \* 직업상담·직업훈련 안내, 취업알선, 고용실태조사, 취업보호자료 작성·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 취업알선 :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직종, 학력, 경력 및 직업훈련 정도를 고려하여 취업보호대상 기업을 연결해 주고 도움을 줌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 취업보호담당관의 취업지원
  -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의 '빈 일자리'에 즉시 취업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드려요.
  - 중소기업 '빈 일자리' 고용알선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요.
  - 창업훈련 및 컨설팅(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과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일 등을 통해 자영업(자신이 직접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 취업을 위해 온갖 지원사업을 해요.
- 깊이 있는 상담이 될 수 있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전담제를 두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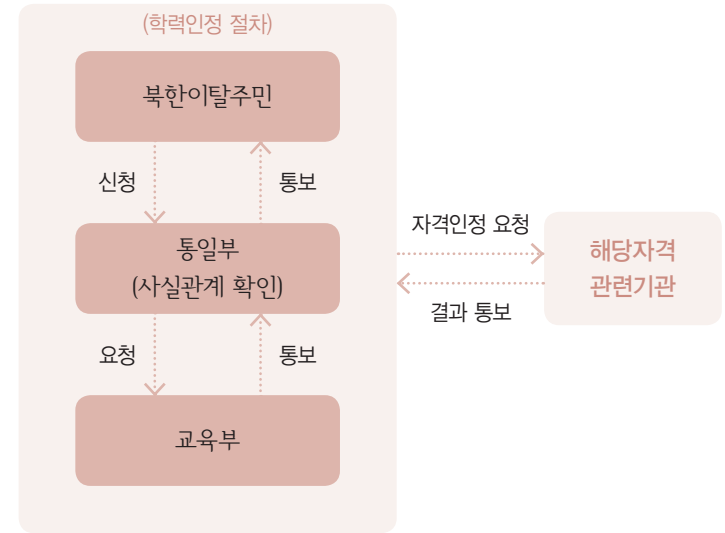
## 4) 자격인정

### 3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이곳에서도 인정해 주나요? 134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과 상응하는(어울리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자격관련법령에서 일정수준의 학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로 보건의료분야 및 전문기술분야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 현재 교사·연구원 자격 등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4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35



### 자격인정 현황

- 보건의료분야 :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방식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심의(심사하고 토의를 함)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에 모두 해당합니다.
- 전문기술분야 : 전문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방식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의를 한 후에 인정
  - 건축·토목·전기·통신·철도·정보처리·금속·전자계산기기사 및 기타 식품기사·한식조리사·방직기사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 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취업지원제도

### 5 취업교육 지원 136

취업에 필요한 교육지원 및 현장체험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 청소년 직업교육(19세 이하)
  - 기술교육 현장체험, 직업탐색교육, 기능사자격취득지원 등
- 온라인배움터 교육 지원
  - 컴퓨터를 활용하여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직무능력향상교육 등 지원
- 전문직종교육
  - 회계, 세무, 옷수선 및 제작(리폼) 등 전문직 교육 지원

관련문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6)

### 6 단기 직장체험 및 자활사업 운영 137

- 단기 직장체험 : 직장에서의 업무경험, 직업소양 등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상 : 20~65세 중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여성우선선발)
  - 기간 : 1~3개월(일4~8시간 근무)
  - 수당 : 월 80만원
- 자활사업 운영 : 기술과 기능을 익혀 향후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남북한 출신주민 공동참여(조건부수급자 등)
  - 기간 : 약 3년간(창업·취업 등의 사유로 중단 가능)
  - 수당 : 월 80~85만원(보건복지부 지원)

관련문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1)

### 7 취업지원(취업지원센터 운영) 138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취업상담 및 알선지원
  - 진로설계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상담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취업관련 서류작성지원
  - 취업상담사 동행면접 지원
- 구직자활동사업
  - 취업기초교육 및 역량교육, 일자리 현장체험
  - 자립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구인구직 교육자료 개발 및 공급
- 취업자 사후관리
  - 직장생활 적응관련 고충상담
  - 현장직무연량강화교육
  - 상호이해제고 프로그램, 근속관리 및 재취업 지원

관련문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02-3215-5881~4)

### 8 영농 및 창업지원 139

- 영농 희망자 육성
  - 대상 : 만 25~65세 미만 탈북민 중 영농희망자
  - 내용 :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통한 기술 습득 지원
- 영농 경쟁력 제고
  - 대상 : 만 25~70세 미만 탈북민 중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내용 : 운영비(비료, 종묘 등), 소규모 시설보수비 및 구입비 등 지원
- 영농 기반 조성
  - 농지 및 농가주택 확보지원, 지역사회 진입과 집들이 지원, 전문가연계 등

- 창업예정자 전문가 상담 및 기 창업자 경영개선 지원
  - 창업예정자 전문가 상담(컨설팅)
  - 기 창업자 경영개선 등

관련문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1)

## 6) 일자리 정보

### 9 고용센터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sup>140</sup>

고용노동부 아래 각 지역별로 있는 고용지원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직장을 소개하고 직업 상담 서비스(봉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취업보호담당관이 1명씩 지정되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는데도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은 아직까지 한 명이기에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은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업 관련 전문 인터넷 사이트>

- 워크넷(<http://www.work.go.kr>)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 인터넷은 <http://www.nkrf.net>, 연락처는 ☎ 02-3215-5881~3입니다.

#### <해당 거주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의 전문가들로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지원합니다.

#### <해당 거주지역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통일부에서 각 지역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해당 지역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음
- 하나원 수료 직후부터 거주하는 동안 각종 지원과 서비스(봉사)를 제공
- ➔ 연락처는 부록 194쪽을 참고하세요.

### 10 남한의 어느 지역에 가면 직장을 많이 구할 수 있나요? <sup>141</sup>

북한에서는 수도인 평양과 다른 지역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서울이 가장 발달된 곳이라고 여겨서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구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남한의 수도인 서울에 많을 수는 있지만 북한처럼 지역 간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남한은 지역별로 특징적인 산업을 키워서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방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 11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직업을 소개해 주나요? <sup>142</sup>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취업전문가입니다. 이들이 취업을 준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무조건 쉽게 취업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은 곤란합니다. 취업보호담당관이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들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취업을 위한 준비와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할 몫입니다. 성공적인 정착 및 취업은 각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4

## 한국의 교육제도

## 1) 한국의 학교 제도

1 한국의 학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sup>143</sup>

한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전문대학 2~3년)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간으로 학비는 무료이며,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으며, 대학교 위로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2월 말~3월 초에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진행되고 약 한 달 정도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2학기는 8월 말~9월 초에 시작하는데, 2학기가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약 두 달 간의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있습니다.

2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겠어요? <sup>144</sup>

## 〈초등학교(6년)〉

-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학습과 교과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교과로는 국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가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과 이외에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동일하지만 학교 급별로 어떤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되는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업의 1시간은 40분을 의미하며 대체적으로 하루에 1~2학년의 경우 4~5교시, 2~4학년의 경우 5~6교시, 5~6학년의 경우 6~7교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초등학교는 국립초(교육대 또는 사범대 부설초), 공립초, 사립초가 있습니다. 국립 및 사립초는 공립초보다 먼저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사립초에 입학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입학할 때는 간편하고 활동적인 옷과 가방, 연필, 필통, 지우개, 공책 등의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중학교(3년)〉

- 중학교 교육과정도 초등학교와 같이 교과 학습과 창의적 체

험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교과로는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과목(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이 있습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교와 같이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 중학교 수업의 1시간은 45분을 의미하며 대체적으로 하루에 6~7교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고등학교(3년)〉

-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와 같이 교과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보통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와 전문 교과(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교과는 고교 졸업 후 대학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이라면, 전문 교과는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 고등학교 수업의 1시간은 50분을 의미하며 대체적으로 하루에 6~7교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 목적고(특수인재 양성 및 전문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특성화고(영상, 디자인, 미용, 세무 등 특정분야 전문교육을 위한 특성화고와 체험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 일반고, 특수 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 자율고는 주로 대학입학을 준비시키는 학교라면, 특수 목적고 중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시키는 학교입니다.

- 일반고는 개인의 선택을 가능한 한 반영하고 집 주소를 고려하여 추첨 배정됩니다. 일반고 이외의 고교 입학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 발표하는 입학전형을 참고하여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서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 학비는 개인에게 부담되며 학교의 유형에 따라 학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학비 보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일반고가 아닌 특수 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경우는 학비가 일반고에 비하여 많이 들고 학비 보조금 제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학교(4년, 2~3년)〉

대체로 4년제 대학은 직업교육보다는 전공 공부를, 2~3년제 대학은 직업과 관련한 전문 기술을 배웁니다.

- 일반대학(여러 분야 전공,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이 진학), 산업대학(주로 산업인력을 양성), 교육대학(초등학교 교사 양성), 전문대학(전문 기술을 가진 직업인 양성),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부), 기능대학(여러 분야의 기술자를 양성)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대학 등록금(학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각 학교별로 국가나 대학, 단체 등에서 주는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것이 있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국공립대는 전액,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의 반액을 정부(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조건 등 상세사항은 120페이지 참조)

## 1) 학력인정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으로 남한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의 학력인정 절차에 의해 제북학력을 인정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은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하므로 통일부나 관할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학력확인(학력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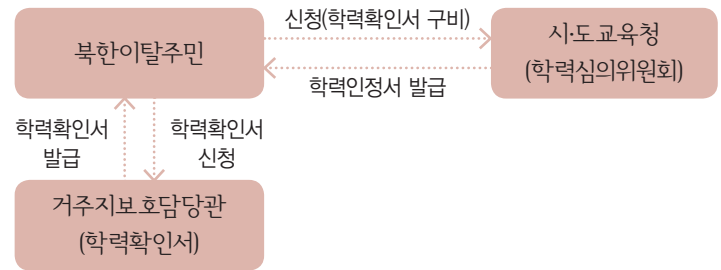
##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어디에서 심사하나요? 145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심사는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전문대학 이상은 교육부 장관이 면접 및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2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46

학력인정 절차는 북한이탈주민이 고등학교 이하는 시도 교육청에, 전문대학 이상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에게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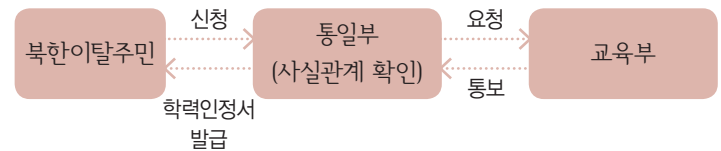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인정 절차



## • 제출서류

- 학력인정신청서 1부(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사진 1매(3×4cm)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인터넷 minwon.go.kr 혹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
- 학력확인서 1부(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minwon.go.kr 에서 발급)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인정 절차





- 제출서류
  - 학력인정신청서 및 학력 인정 관련 상세자료 각 1부(인터넷 : 통일부 홈페이지→소통마당→민원안내→이산가족 및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지원→학력 및 자격인정신청서)

관련문의 :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784)

## 2) 대입검정고시제도와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특례)

### 3 대입검정고시제도에 대해 알려 주실래요? <sup>146</sup>

북한이탈주민이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입 검정고시'라는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비서류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호 해당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심의결과통보서 (시도교육청 발행)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시험일정

회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1회	2월 초	2월 중순	4월 초	5월 초	서울신문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2회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	8월 초	8월 말	

※ 해당 거주지 시·도 교육청에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합격자 발표 등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 4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sup>148</sup>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특례)은 정원 외에 뽑는 특별전형의 한 종류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 입학요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어울리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 대부분은 면접이나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일정 점수의 수능시험성적 등을 통해 선발
- 대학별 전형일정은 다양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sup>149</sup>

정규 국립대학으로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필요 없이 일을 하면서도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6 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sup>150</sup>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직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학과의 공부를 끝내고 일정한 학점을 받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의 비교

구분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과정의 이수	
기관(제도) 성격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관
교육방법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출석 및 시험 실시	온라인 수업 ※ 실습 및 일부 과목 오프라인 수업 가능
평가시험방법	학교 직접방문을 통한 시험 응시	온라인상 실시 ※ 일부 과목 오프라인 실시 가능
학과종류	일반학과 개설	사이버대학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과 개설
학위취득기간	학사학위 4년, 석사학위 2년 6개월	전문학사학위 2년, 학사학위 4년, 석사학위 2년6개월
졸업장	학교 총장명의 졸업장	

##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교육지원

### 7 어떤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하나요? <sup>151</sup>

오랫동안 학습을 하지 못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령기(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를 넘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전국에 9개가 있습니다.

#### • 대안학교의 역할

- 초·중등 교육 및 졸업 후 대학진학, 진로상담까지 해줍니다.
-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이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기 적성과 취미 등을 교사와 학생 1:1 대안 학습법과 특성화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의 동기와 전문적 자질을 키우도록 해줍니다.

관련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개발부(☎02-3215-5751)

### 8 방과후 공부방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sup>152</sup>

방과후공부방 운영은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학습능력 향상, 심리상담, 가족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등 창의적 관련교육 등 다양합니다.

관련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개발부(☎02-3215-5751)

## 9 청소년 그룹홈은 무엇인가요? 15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공동생활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 멘토링 교육, 심리상담,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교육** :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까이에서 현명한 답을 해주는 지도자를 흔히 멘토라고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멘토가 성실하게 지도해 주는 교육이 멘토링 교육입니다.

관련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개발부(☎02-3215-5752)

## 5) 대학과 대학입학자격

### 10 북한에서 중학교(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요? 154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학력(북한의 중학교)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중학교(또는 고등중학교) 중퇴자는 우리나라에서 대입검정고시(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준비는 혼자 할 수도 있고 관련 학원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소학교(인민학교)만을 졸업한 성인의 경우는 먼저 초등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학력인정을 받은 다

음 고입 검정고시(중학교 졸업 학력), 대입 검정고시(고등학교 졸업 학력)를 차례로 봐서 합격을 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35세 이상이라면!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한 북한이탈주민이 35세가 넘은 경우에도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1)

### 11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으면 바로 대학에 갈 수 있나요? 155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6년(또는 5년)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거주지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력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도 교육청의 학력심의회를 통한 학력인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자와 학력이 같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서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대학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입학 조건은 각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미리 물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12 남한에도 북한처럼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이 있나요?

남한에서도 북한처럼 과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과외가 주로 영어나 중국어 중심의 외국어나 예술 분야(피아노, 손풍금, 바이올린, 아코디언 등)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과외는 외국어나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것들도 많습니다.

개인과외는 선생님 한 명과 학생 한 명이 수업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반면 학원은 그보다는 약간 값이 싸입니다. 그러나 학원도 지역이나 배우는 정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종류〉

#### ① 예술, 체육, 외국어 학원

각종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가르치는 학원, 태권도나 수영, 바둑을 배울 수 있는 학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과 글을 가르치는 외국어학원도 많습니다.

#### ②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성격의 학원

학교처럼 반을 나누어서 몇 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원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학생들을 같은 반에 배정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③ 공부방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밖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부족한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주민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에 관한 서비스(봉사)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춰 놓고 있는 곳입니다.



남한의 학원은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요!

- 학원은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 노인 등 누구나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일정한 돈만 내면 배울 수가 있어요.
- 남한은 학원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각종 외국어, 요리, 미용 기술, 춤, 노래, 미술, 악기, 온갖 체육활동에 관한 것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센터(주민자치센터 외)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노력만 있으면 학원을 통해 어떠한 것도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세요~!

## 부록

### 대한민국 국민 기본상식

정식 국명

위치와 면적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

인구

경제

행정구역

명절과 공휴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소속기관 명단

전국 거주보호담당 부서 및 연락처

취업보호담당관 현황

생활에 유용한 정부 포털 소개

주요 전화번호 안내

대한민국 지도

전국 지하철 노선도

찾아보기

우리생활

글로벌가이드

# 대한민국 국민 기본상식

## 정식 국명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고 영문 표기는 'Republic of Korea'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편의상 '한국'(영문으로 Korea)으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 위치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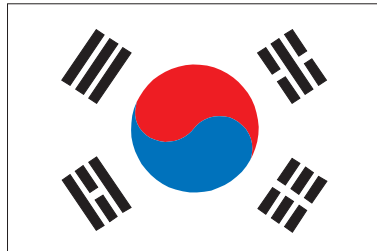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약 1,000km의 길이와 약 3,400여 개의 팔려있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반도는 북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러시아에 접하고 동쪽, 서쪽, 남쪽의 3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그 건너에는 중국과 일본이 면해 있습니다.

남한의 면적은 99,000km<sup>2</sup>이고 이는 한반도 전체 면적 221,000km<sup>2</sup>의 45%에 해당합니다.

## 국기(태극기)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라고 부르며 흰색 바탕에 가운데의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 곤, 감, 리 4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고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 국가(애국가)

애국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애국가'라는 말 자체를 국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는 1935년 안익태 선생이 작곡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랫말을 붙여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려 전국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애 국가**

보통빠르게 안익태 작곡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갈도 록,  
 2. 남산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3.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 이,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 하 여.

하느님 이 보 우 - 화 사 우 리 나 라 만 세,  
 바 랍서 리 불 변 - 함 은 우 리 기 상 일 세,  
 밝 은 달 은 우 리 - 가 숨 일 편 단 심 일 세,  
 괴 로 우 나 줄 거 - 우 나 나 라 사 랑 하 세.

(후렴) 부 - 궁 화 삼 - 천 리 화 려 강 - 산.

대 한 사 람 대 한 - 으 로 길 이 보 전 하 세.

## 국화(무궁화)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무궁화’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꽃이며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 인구

2017년 남한의 총 인구는 5천 171만 명이고(주민등록 기준) 북한의 인구는 2천 520만 명(유엔인구기금(UNFPA) '15년 보고서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7천 691만 명으로 세계 20위 수준입니다.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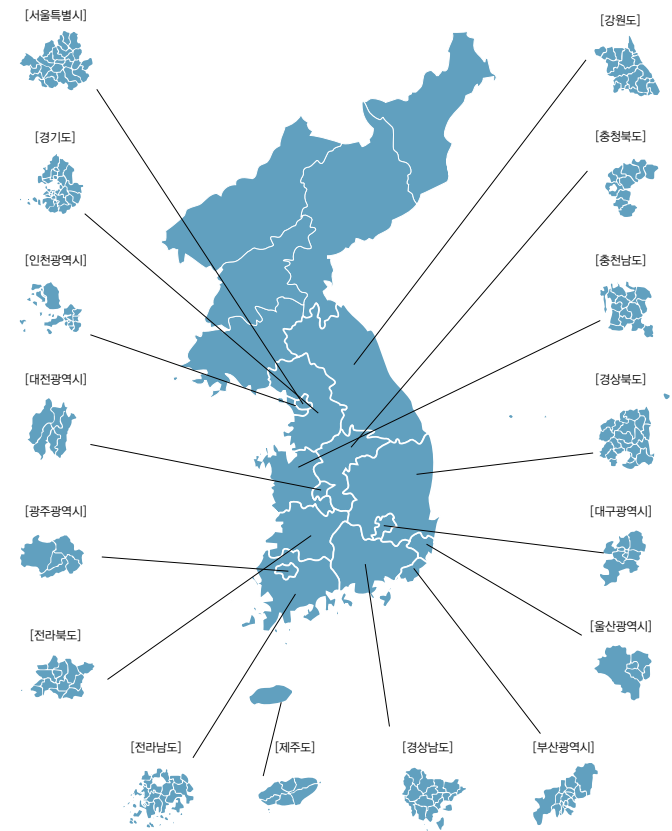
한국은 선진공업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경제규모(2016년 기준)는 세계 11위 수준입니다. 2016년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1조 4천 43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7천 561달러입니다.

2016년 무역규모는 9012억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며 주요 수출 품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IT제품(전자, 컴퓨터 관련), 선박, 철강 등이 있습니다.

## 행정구역

남한은 행정적으로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뉩니다.

- 1개 특별시 : 서울특별시
- 6개 광역시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8개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1개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1개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이러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시, 자치군, 자치구)로 나뉩니다.

• 특별시 → 구 / 광역시 → 구, 군 / 도 → 시, 군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과 주변도시(인천, 부천, 안양, 성남, 의정부, 광명, 시흥, 의왕, 군포, 과천, 구리, 광주, 고양, 하남시 등)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1천만 명, 경기도 1천만 명, 인천 2백5십만 명 등 전체 인구의 약 50%가 밀집해 있습니다.

### 명절과 공휴일

대한민국은 4대 명절(설날, 한식, 단오, 추석)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으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이란 각종 선거투표일, 임시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달력에서 양력과 음력 날짜를 함께 사용하며 명절과 절기(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시풍습)는 주로 음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명칭	날짜	의미
신정	1월 1일(공휴일)	• '양력'에 의한 새해가 시작되는 날
설날	1월말~2월초경 (음력 1월 1일, 명절, 공휴일)	• '음력'에 의한 새해가 시작되는 날, •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 • 떡국과 만두를 먹고 새 옷('설빔')을 입고 세배(어른에게 절하는 것), 성묘(조상의 산소에 가는 것)를 함.

명칭	날짜	의미
삼일절	3월 1일 (국경일, 공휴일)	•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우리 민족 전체가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펼친 날로 최대 규모의 항일독립운동을 기념
한식	4월 5~6일경(명절) (음력 2~3월)	• 4대 명절 중의 하나 • 명칭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옛 습관에서 유래
어린이날	5월 5일(공휴일)	•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날
석가탄신일	5월경 (음력 4월 8일, 공휴일)	•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 •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 •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로 부르고 연등행사
단오	6월경 (음력 5월 5일, 명절)	• 더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 초여름, 일 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 •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함
현충일	6월 6일(공휴일)	• 6.25전쟁 중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를 추모하는 날
제헌절	7월 17일(국경일)	• 우리나라의 근본법규인 '헌법'을 만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
광복절	8월 15일 (국경일, 공휴일)	•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
추석	9월~10월경 (음력 8월 15일, 명절, 공휴일)	• 한해 농사에 감사하는 날 • 음식은 햅곡식과 송편을 먹고 차례(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성묘 • 전통행사로 달맞이와 강강술래
개천절	10월 3일 (국경일, 공휴일)	•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
한글날	10월 9일(국경일, 공휴일)	•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날
성탄절	12월 25일(공휴일)	•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소속기관 명단

연번	기관명	대표자	중간관리자	연락처	팩스	소재지	우편번호
1	동부하나센터 (한적 서울지사 관악봉사관)	윤정희	이원희 (사무국장)	02-882-5210~1	02-882-5214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 28	08724
2	서부하나센터 (가양7종합 사회복지관)	김성민	장기석 (사무국장)	02-2668-8600	02-2668-8596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09	07531
3	남부하나센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권구택	정민희 (팀장)	02-2690-8762	02-2694-1335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11길16	08031
4	북부하나센터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유환	김선화 (사무국장)	02-975-2465	02-948-0523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	01851
5	부산하나센터 (동아대학교)	강동원	유달주 (사무국장)	051-200-5990	051-200-5993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평생교육원 5층	49236
6	대구하나센터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조재희	김재인 (사무국장)	053-356-0463~4	053-356-0474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54-1	41935
7	인천 하나센터 (하이사회복지센터)	박철성	최미정 (사무국장)	032-437-1173	032-425-1173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1 가산타워 12층 1203호	21679
8	광주하나센터 (광주전남북한 이주민지원센터)	윤승현	이근형 (사무국장)	062-374-4264	062-372-4262	광주시 서구 상무화원로 19-1	61960
9	대전하나센터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배영길	윤은진 (팀장)	042-283-9191	042-272-2376	대전시 동구 동부로56-7	34674
10	울산하나센터 (kvo국제봉사기구)	박을남	윤기남 (과장)	052-295-3161	052-224-8123	울산시 중구 다운동763-5	44402
11	동부하나센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김재일	우성훈 (팀장)	031-714-0125	031-714-6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13617
12	서부하나센터 (덕유사회복지관)	홍갑표	김대순 (사무국장)	032-329-2325	032-326-0502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146	14536

연번	기관명	대표자	중간관리자	연락처	팩스	소재지	우편번호
13	남부하나센터 (평택YMCA)	소태영	허용림 (사무국장)	031-656-2012	031-656-2015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65	17900
14	북부하나센터 (가족보건복지협회)	남명구	박하영 (사무국장)	031-544-1154	031-541-989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24-32 청솔빌딩 202호	11174
15	북부하나센터 (자유총연맹강원지부)	차주건	정지숙 (과장)	033-254-6670	033-254-5822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45	24239
16	남부하나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김효중	고병진 (팀장)	033-762-8131	033-766-8132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31	26481
17	충북하나센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심의보	백운기 (사무국장)	043-238-0840	043-238-0842	충북 청주시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 복지센터 3층	28583
18	충남하나센터 (천안쌍용종합 사회복지관)	이윤기	차미정 (사무국장)	041-415-1515	041-571-75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57	31166
19	전북하나센터 (전주 YWCA)	이명자	조미영 (사무국장)	063-224-5501	063-221-55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98	55082
20	전남하나센터 (목포종합사회복지관)	김민석	이명희 (사무국장)	070-4680-2141	070-4515-7840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712	58638
21	경북하나센터 (경북이주민센터)	지민겸	지민겸 (센터장)	054-444-8861	054-256-0458	경북 구미시 산업로284	39232
22	경남하나센터 (한적 경남지사)	임정환	배지철 (사무국장)	055-263-4138	055-263-4180	경남 창원시 용지로226	51430
23	제주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전연숙	이명순 (사무국장)	064-723-2123	064-724-21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빌딩) 6층	63098

## 전국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서울	시청	자치행정과	02-2133-6439
서울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02-330-8495
서울	강남구	자치행정과	02-3423-5197
서울	관악구	자치행정과	02-897-5207
서울	동작구	자치행정과	02-820-9126
서울	강북구	자치행정과	02-901-6086
서울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02-2127-4385
서울	송파구	자치행정과	02-2147-2242
서울	광진구	자치행정과	02-450-7148
서울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69
서울	양천구	자치행정과	02-2620-3101
서울	구로구	자치안전과	02-860-2497
서울	강서구	자치안전과	02-2600-6042
서울	성동구	자치행정과	02-2286-5139
서울	종로구	자치행정과	02-2094-0423
서울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02-2670-3165
서울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55
서울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052
서울	성북구	자치행정과	02-2241-4354
서울	노원구	자치행정과	02-2116-3129
서울	용산구	자치행정과	02-2199-6376
서울	종로구	자치행정과	02-2148-1984
서울	중구	사회복지과	02-3396-5354
서울	은평구	자치행정과	02-351-6306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서울	강동구	자치안전과	02-3425-5145
서울	마포구	자치행정과	02-3153-8307
부산	시청	여성정책담당관	051-888-1536
부산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4352
부산	사상구	복지관리과	051-310-4433
부산	사하구	복지사업과	051-220-5664
부산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11
부산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2
부산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부산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15
부산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3
부산	기장군	행복나눔과	051-709-4652
부산	북구	자립지원과	051-309-4495
부산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519-4953
부산	동구	생활보장과	051-440-4324
부산	부산진구	생활지원과	051-605-5843
부산	연제구	사회복지과	051-665-4527
부산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4
대구	시청	자치행정과	053-803-3374
대구	수성구	행정지원과	053-666-2228
대구	북구	총무과	053-665-2239
대구	달성군	자치행정과	053-668-2226
대구	동구	행정지원과	053-662-2223
대구	서구	안전행정과	053-663-2226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대구	달서구	총무과	053-667-2221
인천	시청	자치행정과	032-440-2402
인천	동구	자치행정과	032-770-6163
인천	강화군	복지지원실	032-930-3346
인천	계양구	자치행정과	032-450-5195
인천	중구	총무과	032-760-7166
인천	연수구	총무과	032-749-7184
인천	부평구	자치행정과	032-509-6155
인천	남동구	남동다문화사업소	032-453-2214
인천	남구	총무과	032-880-4126
인천	서구	자치행정과	032-560-4514
광주	시청	자치행정과	062-613-2916
광주	서구	총무과	062-360-7433
광주	광산구	주민자치과	062-960-8103
광주	북구	주민자치과	062-510-1287
대전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4702
대전	대덕구	자치행정과	042-608-6515
대전	동구	총무과	042-251-4131
대전	중구	총무과	042-606-6238
대전	유성구	자치행정과	042-611-2214
대전	서구	총무과	042-611-6916
울산	시청	자치행정과	052-229-2484
울산	중구	자치행정과	052-290-3263
울산	북구	자치행정과	052-241-7263
울산	울주군	총무과	052-229-7134
울산	남구	자치행정과	052-226-5475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울산	동구	자치민원과	052-209-3164
경기	도청	통일기반조성담당관	031-8030-2383
경기	연천군	안전행정과	031-839-2768
경기	파주시	총무과	031-940-4964
경기	양주시	총무과	031-8082-5243
경기	부천시	참여소통과	032-625-2323
경기	고양시	마이스산업과	031-8075-3533
경기	화성시	자치행정과	031-369-1848
경기	양평군	총무담당관	031-770-2482
경기	여주시	자치행정과	031-887-2143
경기	안성시	가족여성과	031-678-3892
경기	구리시	총무과	031-550-2101
경기	광주시	총무과	031-760-5621
경기	의왕시	행정지원과	031-345-2124
경기	안산시	자치행정과	031-481-2156
경기	김포시	안전행정과	031-980-2534
경기	시흥시	행정과	031-310-2122
경기	오산시	자치행정과	031-8036-7143
경기	의정부시	자치행정팀	031-828-2135
경기	가평군	총무과	031-828-2135
경기	수원시	자치행정과	031-228-2108
경기	동두천시	자치행정과	031-860-2123
경기	포천시	자치행정과	031-538-2108
경기	이천시	자치행정과	031-644-2105
경기	용인시	민원여권과	031-324-2635
경기	군포시	자치행정과	031-390-0344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경기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5516
경기	성남시	자치행정과	031-729-4832
경기	광명시	자치행정과	02-2680-2143
경기	평택시	자치행정과	031-8024-2716
경기	하남시	자치행정과	031-790-5089
경기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4224
강원	도청	복지정책과	033-249-3697
강원	강릉시	주민복지지원과	033-640-5759
강원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80-3314
강원	동해시	복지과	033-539-8559
강원	원주시	복지정책과	033-737-2614
강원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13
강원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033-639-2311
강원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90-4166
강원	삼척시	주민생활지원과	033-570-3857
강원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2211
강원	홍천군	주민복지과	033-430-2091
충북	도청	자치행정과	043-220-2616
충북	진천군	행정과	043-539-3144
충북	괴산군	행정과	043-830-3673
충북	옥천군	자치행정과	043-730-3164
충북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4
충북	단양군	자치행정과	043-420-3232
충북	충주시	총무과	043-850-5135
충북	청주시	행정지원과	043-201-1563
충북	제천시	자치행정과	043-641-5245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충북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382
충남	도청	자치행정과	041-635-3594
충남	서산시	자치행정과	041-660-2232
충남	홍성군	행정지원과	041-630-1307
충남	보령시	총무과	041-930-3249
충남	금산군	자치행정과	041-750-2337
충남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453
충남	천안시	자치민원과	041-521-5328
충남	당진시	안전행정과	041-350-3235
충남	공주시	복지지원과	041-840-8163
충남	예산군	총무과	041-339-7206
충남	아산시	여성가족과	041-540-2132
전북	도청	자치행정과	063-280-2206
전북	군산시	총무과	063-454-2246
전북	정읍시	총무과	063-539-5134
전북	익산시	행정지원과	063-859-5734
전북	전주시	자치행정과	063-281-2239
전북	남원시	총무과	063-620-6066
전북	완주군	행정지원과	063-240-4232
전북	김제시	행정지원과	063-540-3988
전남	도청	자치행정과	061-286-3525
전남	해남군	행정지원과	061-530-5534
전남	나주시	총무과	061-339-8425
전남	무안군	행정지원과	061-450-5315
전남	광양시	총무과	061-797-2240
전남	보성군	총무과	061-850-5133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전남	여수시	총무과	061-659-3107
전남	목포시	여성가족과	061-270-8694
전남	순천시	총무과	061-749-5641
전남	영암군	총무과	061-470-2233
경북	도청	자치행정과	053-950-2138
경북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054-779-6591
경북	안동시	행정지원실	054-840-5098
경북	영주시	자치행정과	054-639-6264
경북	상주시	총무과	054-537-7161
경북	경산시	가족정책과	053-810-5330
경북	문경시	총무과	054-550-6088
경북	영천시	총무과	054-330-6086
경북	포항시	자치행정과	054-270-2075
경북	칠곡군	안전행정과	054-979-6126
경북	김천시	자치행정과	054-420-6247
경북	구미시	총무과	054-480-6764
경남	도청	대민봉사과	055-211-3633
경남	창원시	행정과	055-225-2746
경남	양산시	행정과	055-392-2163
경남	밀양시	행정과	055-359-5079
경남	통영시	행정과	055-650-4034
경남	사천시	행정과	055-831-2567
경남	김해시	총무과	055-330-3098
경남	고성군	행정과	055-670-2105
경남	창녕군	행정과	055-530-1205
경남	진주시	총무과	055-749-5142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경남	거제시	행정과	055-639-3236
제주	도청	자치행정과	064-710-6854
제주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1
제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4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여성가족과	044-300-3713

\* 하나넷 사용자 기준이며, 거주인원이 적어 하나넷 미사용하는 시군구는 제외된 자료입니다.

## 취업보호담당관 현황

지방고용 노동청	지방고용 노동지청	고용센터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청	본청	서울고용센터	중구, 종로구	02-2004-7324
	서울 서초지청	서초 고용센터	서초구	02-580-4912
	서울 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센터	강남구	02-3468-4836 F.02-6915-4031
	서울 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센터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02-2142-8965
	서울 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센터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02-2077-3464
	서울 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센터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02-2639-2357
	서울 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센터	종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171-1891 F.02-6915-4087
	서울 관악지청	서울관악 고용센터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02-3282-9233 F.02-6915-4101
중부청	본청	인천고용센터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032-460-4778
	인천 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센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40-5866
	수원지청	수원고용센터	수원시, 화성시	031-231-7906
	수원지청	용인고용센터	용인시	031-289-2246
	화성지청	화성고용센터	화성시	031-290-0801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646-1244
	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부천시	032-320-8903 F.0505-130-0047
	부천시청	김포고용센터	김포시	031-999-0920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031-463-0744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	광명시	02-2680-1511

지방고용 노동청	지방고용 노동지청	고용센터	관할지역	연락처
중부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안산시, 시흥시	031-412-6923 F.0505-130-0143
	의정부 지청	의정부 고용센터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구리시, 남양주시)	031-828-0959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고양시, 파주시	031-920-3980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성남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739-3111
	춘천시청	춘천고용센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08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033-610-1949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원주시, 횡성군	033-769-0905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태백시, 삼척시	033-550-8643
	영월 출장소	영월고용센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33-371-6265
	부산청	본청	부산고용센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연제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부산 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센터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60-7106
부산 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센터	사상구, 북구, 강서구	051-330-9861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창원시(합안군, 의령군, 창녕군)	055-239-5368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052-228-1950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김해시, 밀양시	055-330-9531
양산지청		양산고용센터	양산시	055-379-2413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055-760-6747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650-1861

지방고용 노동청	지방고용 노동지청	고용센터	관할지역	연락처
대구청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경산시)	053-667-6098
	북부지청	대구강북 고용센터	서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053-606-8075
	북부지청	대구서부 고용센터	군위군, 북구, 칠곡군,	053-605-6450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포항시, 경주시	054-280-3013 F.0505-130-3003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국가산업단지	054-440-3321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054-851-8056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영주시, 봉화군(문경시, 상주시)	054-639-1124
	광주청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구례군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063-270-9002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익산시, 김제시	063-840-6553 F.0505-130-4070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50-0622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061-280-0522
순천지청		순천고용센터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광양시	061-720-9121
여수지청		여수고용센터	여수시	061-650-0243 F.0505-130-4034

지방고용 노동청	지방고용 노동지청	고용센터	관할지역	연락처
대전청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대전시, 금산군	042-480-3958
	대전청	공주고용센터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041-851-8507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6762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041-620-7475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043-850-4052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태안군)	041-930-6291
	보령지청	서산고용센터	서산, 태안	041-661-5617

## 생활에 유용한 정부 포털 소개

직접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포털명(인터넷 주소)	포털 내용
민원24 (www.minwon.go.kr)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전입신고, 납세 증명 등)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cyber112.police.go.kr)	일반범죄, 마약사범, 교통법규 위반 등 신고와 경찰비리 및 예산낭비 등 제보, 경찰업무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신청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110.go.kr)	국민이 하나의 전화번호(국번 없이 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www.neis.go.kr)	학부모서비스, 학생서비스, 온라인 대입전형 안내, 교직원 온라인 채용, 검정고시 온라인접수, 홈에듀 민원서비스, 사용자지원 서비스, 일반행정정보 등을 제공
여권 안내 (www.passport.go.kr)	여권 발급 필요 서류, 사진 규정, 재발급, 발급상황 조회, 분실, 습득 신고 및 수수료, 민원 서식 제공
해외 안전여행 (www.0404.go.kr)	여권 발급 필요 서류, 사진 규정, 재발급, 발급상황 조회, 분실, 습득 신고 및 수수료, 민원 서식 제공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travelinfo.cdc.go.kr)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는 해외감염정보, 예방접종, 해외여행건강정보를 제공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바로알기, 민원창구, 정책참여, 사이버교육, 홍보자료 제공,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물품 서비스 구매 전 후 유의할 사항 제시, 소비자 불만 상담 조회, 모범 상담사례 및 판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	전국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가격(아파트실거래가,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아파트시세),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지별로 지도상에서 제공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등기 등 민원 서비스 제공

포털명(인터넷 주소)	포털 내용
기상청 날씨정보 (www.weather.kr)	오늘 및 내일 날씨정보, 예보해설, 기후전망, 기상상식 등을 안내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우편 및 소피업무 등 우체국의 다양한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된 인터넷상의 우체국
새주소안내시스템 (www.juso.go.kr)	도로명, 건물번호에 기반한 새주소 소개, 주소 전환, 도로명 주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
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로서 부처별 섹션별 정책정보, 전문자료,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
대한민국 정부포털 (www.korea.go.kr)	정부포털은 공공뉴스, 공공기관 안내, 생활플러스, 테마별서비스, 공공웹/앱 안내, 축제/공연 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
자격검정정보시스템 (www.q-net.or.kr)	자격검정정보시스템은 자격증시험정보, 기출문제, 합격자발표, 실기시험일정 등을 제공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는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실업자 훈련, 근로자 수강 지원 과정, 국비지원 교육기관 리스트 제공 및 계좌제를 안내
잡알리오 (www.job.alio.go.kr)	공공기관 채용 정보 사이트, 채용검색, 박람회, 기관정보 등 안내 서비스 제공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부모지원 시스템, 사랑카드, 보육 전자바우처 사업, 어린이집 검색 안내 등을 제공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의료기관 찾기, 이상반응신고, 예방접종지침, 접종내역 조회, 예방접종 정보검색, 사이버민원 안내 등을 서비스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G-health)	회원을 위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서 진료예약 및 진료내역조회, 보건교육 신청, 제증명 발급, 민원상담 등을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안전Dream (www.safe182.go.kr)	1:1상담, 신고/상담, 가정폭력 신고, 불량식품 신고, 성폭력 신고, 청소년/학교폭력이용안내사건등록신청, 실종아동 검색, 실종아동 신고, 실종아동 찾기 전화 182 등의 서비스 제공
어린이안전넷 (www.isafe.go.kr:447)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인터넷상의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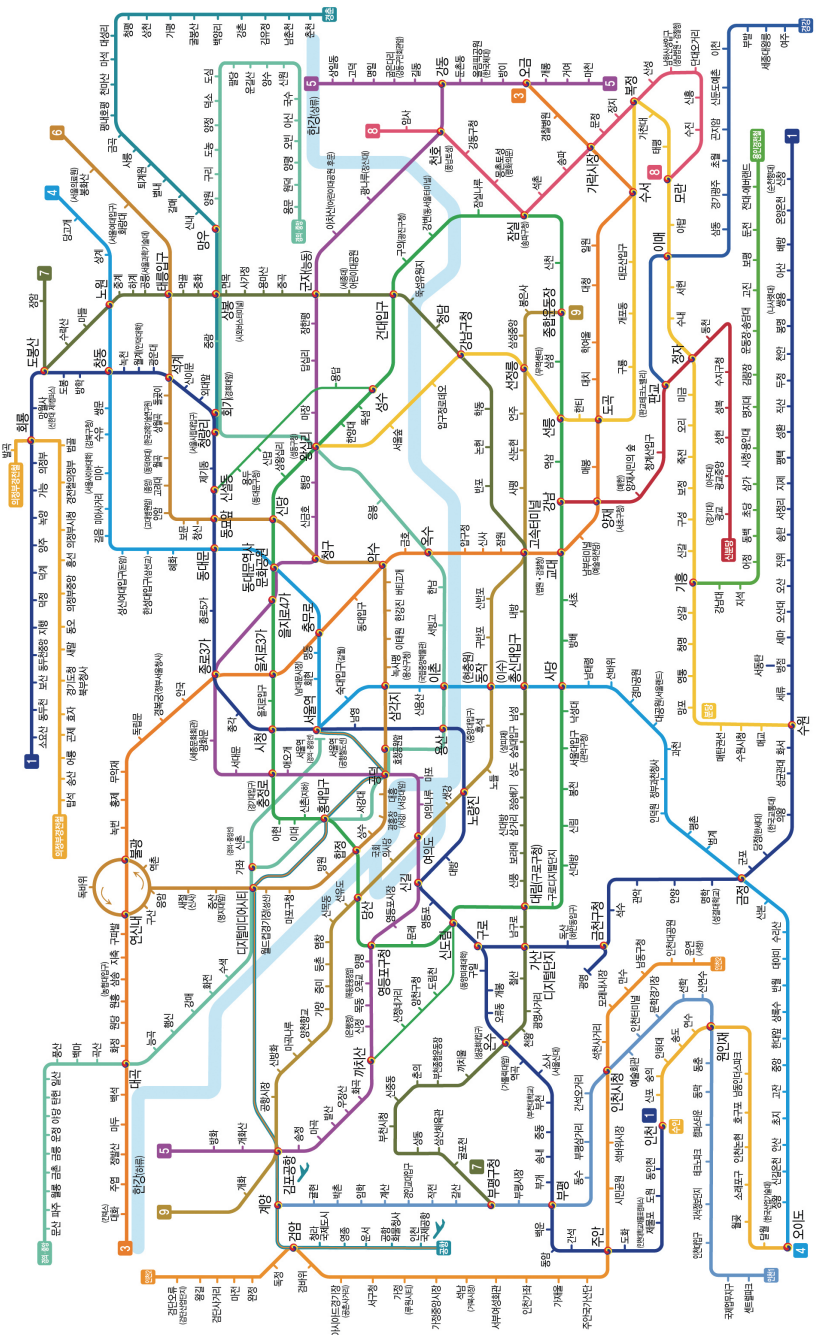
# 주요 전화번호 안내

유형	신고, 상담 내용	전화번호	관련기관
사건 사고 긴급 신고	간첩신고	111	국가정보원
		113	경찰청
	범죄신고	112	경찰청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응급의료·병원 정보	119	소방방재청
	학교, 여성폭력신고(성폭력, 성매매, 학교, 가정폭력의 법률정보 및 상담안내)	117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사이버테러, 개인정보침해 신고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선박조난 등 해양 긴급 신고	122	해양경찰청
	밀수 사범 신고	125	관세청
	마약·범죄 종합신고	1301	검찰청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 신고	1337	국군기무사령부
민원 신고 상담 전화	정부 통합 민원안내 콜센터	110	
	시/도 민원신고 센터	120	서울시 각 자치구
	수도 고장신고	121	상수도사업본부
	전기 고장 신고	123	한국전력공사
	환경오염 신고	128	환경부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법률 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 민원 상담	182	경찰청
	인권침해 상담	1331	국가인권위원회
	금융 민원상담	1332	금융감독원
	노동법령, 제도상담	1350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상담	1355	국민연금공단
	방송통신심의 민원	1377	방송통신위원회
	주민등록 진위확인	1382	안전행정부
	부패방지 관련 신고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불량식품신고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스 사고 신고	1544-4500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 안전 상담	1588-7500	한국전기안전공사
	생활 정보	107 손말이음센터	107
전화번호 안내		114	KT
세계시간 안내		116	KT
일기예보 안내		13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광정보 안내		1330	한국관광공사
교통정보 안내		1333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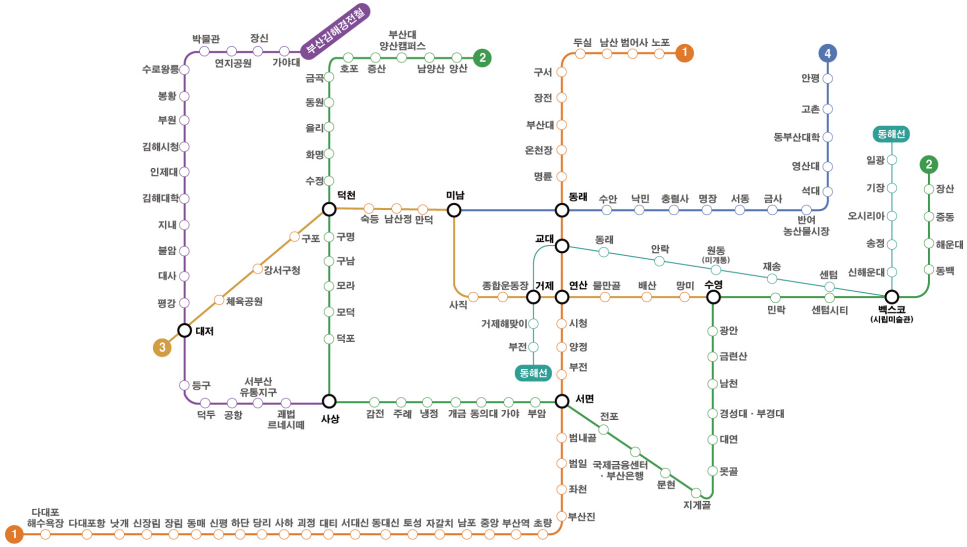
유형	신고, 상담 내용	전화번호	관련기관
생활 정보	서울 120 콜센터	02-120	다산콜센터
	인천 120 콜센터	032-120	미추홀콜센터
	경기 120 콜센터	031-120	경기도콜센터
	부산 120 콜센터	051-120	바로콜센터
	우체국민원 안내	1588-1300	우정사업본부
질병 중독 상담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예방법 정보와 개인별 상담	1599-0075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금연 상담, 흡연 예방 안내	1544-9030	금연길라잡이
	암 검진, 진단방법, 예방 치료법	1577-8899	국가암정보센터
	에이즈 증상, 감염경로, 진단방법, 예방법, 에이즈검사	1599-8105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마약류 및 약물정보, 치료 및 재활사업 안내	02-2677-224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미아 신고 아동 상담	실종 아동 찾기	182	경찰청
	학대아동 발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안내	129, 1577-139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보호, 요보호아동,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1577-140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성폭력 센터,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사건조사, 온라인 신고 제공	02-3274-1375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상담, ADHD, 놀이치료, 사회성 심리검사	02-511-5080	한국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청소년 안내 상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정보제공, 상담 등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	1388	헬프콜 청소년전화
	학교폭력 등 사이버상담	1588-9128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자녀들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특수교육 등에 관한 상담	02-2285-1318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고민 및 성폭행 상담, 음란물 및 인터넷 중독	02-3141-6191	탁틴내일
	여성 긴급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긴급전화상담, 긴급보호	1366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해결, 부부캠프 등		02-953-2017	한국여성상담센터
여성인권운동단체, 가정폭력, 성평등운동		02-2263-6464	한국여성의전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상담, 사회·문화생활 사업지원		02-318-5880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성·심리 상담, 예비결혼학교 상담		02-332-9978	푸른아우성
노인 장애인 상담	학대노인 삶의질 향상, 권리증진, 피해노인 및 신고	1577-138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 및 노인 대상 평생교육, 무료 온라인 정보화교육	1588-0814	배움나라
	노년기의 다양한 사건 상담	1644-9998	한국노인의 전화
	노인주거복지시설안내, 시설입소상담, 의료복지시설안내	02-712-976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직업재활, 시설운영개선	02-3472-3556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여성 장애인 복지, 인권활동, 상담소 및 쉼터 안내	02-3675- 4465~6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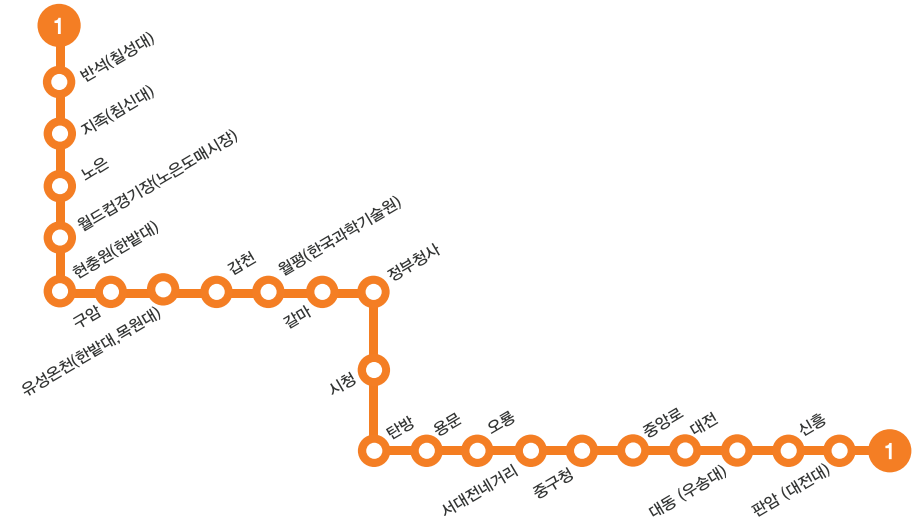
#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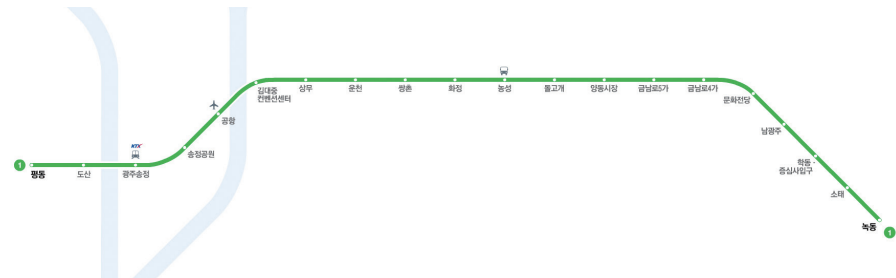
# 부산 지하철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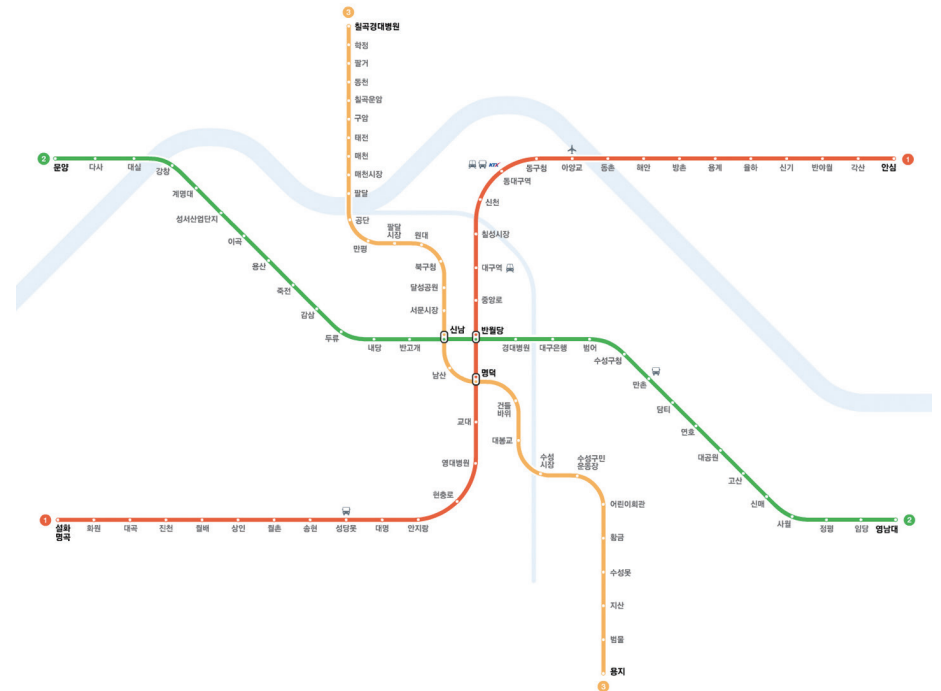
# 대전 지하철 노선도



# 광주 지하철 노선도



# 대구 지하철 노선도



# 찾아보기

## 제1장 사회생활 안내

1	지하철이 무엇인가요?	8
2	교통카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9
3	지하철 요금은 얼마인가요?	13
4	지하철 타는 방법을 알려 주시겠어요?	14
5	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4
6	버스의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15
7	버스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16
8	버스 요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8
9	택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9
10	택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9
11	택시 요금은 얼마나 비싼가요?	20
12	택시 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0
13	기차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21
14	기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1
15	기차 승차권 구입하는 방법은요?	22
16	항공권은 미리 예매해야 하나요?	23
17	항공권은 비싼데 싸게 살 수 있는 다른 항공권은 없나요?	24
18	일반전화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
19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27
20	인터넷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29
21	인터넷은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30
22	남한의 텔레비전(TV)은 북한과 어떻게 다른가요?	31
23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요?	31
24	은행에 대해 알아볼까요?	32
25	은행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34
26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35
27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6
28	은행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36
29	은행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나요?	38

30	공공요금이란 무엇인가요?	40
31	아파트 관리비는 무엇인가요?	41
32	주거 형태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41
33	전세와 월세가 있다는데요?	42
34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44
35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요?	44
36	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46
37	살 집을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던데요?	47
38	처음에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죠?	48
39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9
40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릴 수 없다면서요?	51
41	병원은 규모에 따라 구분이 된다면서요?	54
42	병원에 따라 단계별로 진료 형태가 다르다면서요?	56
43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57
44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면서요?	61
45	물건을 사고 돈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3
46	물건을 싸게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65
47	중국에서는 가격 흥정을 많이 했는데 남한에서는 왜 값을 깎아주지 않나요? 혹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그런 것인가요?	66
48	머리를 손질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지요?	67
49	목욕하는 곳도 종류가 매우 많다고 하던데요?	68
50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데요?	71
51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나요?	73
52	나중에 중국에 진출해서 한식점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4
53	일본에 살면서 취직할 수 있나요?	74
54	북한이탈주민들이 위반하기 쉬운 법질서에는 무엇이 있나요?	75
55	법을 잘 몰라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7
56	북한이탈주민도 군대에 가나요?	78
57	서류를 떼 오라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79
58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요?	80
59	경찰서와 파출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신고전화 112번)	81
60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하라는데요?(신고전화 119번)	82
61	편지나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요?	83

62	우체국이 은행에서 하는 일들도 한다는데요?	84
63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84
64	큰 규모의 도서관은 어디에 있나요?	85

## 제2장 정착지원제도

65	조선족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하나원 수료 후 어떻게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나요?	91
66	조선족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국 국적이라 호적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2
67	남편이 조선족인데 남한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싶어요. 국제결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93
68	제 신분이 알려져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93
69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4
70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에 가서 국제결혼을 하고 살 수 있나요?	94
71	북한에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95
72	배정을 받은 임대 아파트를 2년 이내라도 계약을 깨뜨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99
73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의 이름이 다양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100
74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101
75	하나원 수료 이후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102
76	주택을 포기·반납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주택을 다시 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2
77	살던 임대주택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전세로 집에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요?	104
78	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요?	104
79	돈을 마련하여 집을 사고 싶습니다.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요?	104
80	배정받은 거주지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105

81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해도 정착지원금 지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107
82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각종 정착지원금, 집 등은 어떻게 되나요?	107
83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 경우에도 정착금이 나오나요?	107
84	정착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잃어버렸거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8
85	주거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08
86	지방에 살면 장려금이라는 돈을 받는다면요?	110
87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지방거주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111
88	사람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돈이 더 있다면요?	112
89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면 돈을 더 받는다고 하던데요?	113
90	취업장려금은 누가, 언제,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요?	115
91	취업장려금을 2년 치나 3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신청해도 되나요?	116
92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해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116
93	취직 후 야간에 대학을 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나요?	119
94	남한에서 결혼하여 자녀가 생기면 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120
95	북한이탈주민이면 교육지원금으로 남한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전혀 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인가요?	120
96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만두고 다른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도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0
97	미래행복통장의 지원범위와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23
98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 그러한가요?	124
99	하나원 교육을 끝내고 나가면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나요?	126
100	배정을 받은 지역으로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28
101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어떤 것들을 도와주나요?	131
102	취업보호담당관이 해주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132
103	신변보호담당관도 있다면요?	132
10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133
105	생계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136
106	기초생활수급제도 혜택은 하나원을 수료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136
107	처음 거주지를 배정받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37

108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초생계비가 그대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37
109	의료급여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137
110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138
111	하나원 수료 후에 의료급여 대상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나요?	139
112	하나원 수료 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39
113	보건소는 어떤 곳인가요?	140
114	국민연금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140
115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특례 가입이라는 것은 뭔가요?	141
116	장기를 이식할 때에도 지원을 해준다면요?	142
117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143
118	치과지원도 가능한가요?	144
119	장학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려 주시겠어요?	144
120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144
121	농사를 짓거나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지원도 하나요?	145

### 제3장 직업과 교육

122	직업이 개인적으로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149
123	직업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가요?	150
124	남한과 북한의 직장생활은 어떻게 다른가요?	151
125	남한의 직장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54
126	직장에 다니게 됐는데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깠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5
127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156
128	근로시간(노동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57
129	임금은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지요?	158
130	직장에서 낮에 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더하면 월급은 어떻게 주나요?	159
131	아기를 낳으면 출산휴가도 주나요?	159
132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162
133	취업을 하고도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163
134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이곳에서도 인정해 주나요?	164

135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65
136	취업교육 지원	166
137	단기 직장체험 및 자활사업 운영	166
138	취업지원(취업지원센터 운영)	167
139	영농 및 창업지원	167
140	고용센터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168
141	남한의 어느 지역에 가면 직장을 많이 구할 수 있나요?	169
142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직업을 소개해 주나요?	169
143	한국의 학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170
144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겠어요?	171
145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어디에서 심사하나요?	174
146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75
147	대입검정고시제도에 대해 알려 주실래요?	176
148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이라는 것이 있다면요?	177
149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177
150	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178
151	어떤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하나요?	179
152	방과후 공부방이라는 것이 있다면요?	179
153	청소년 그룹홈은 무엇인가요?	180
154	북한에서 중학교(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요?	180
155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으면 바로 대학에 갈 수 있나요?	181
156	남한에도 북한처럼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이 있나요?	182











# MEMO